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000-000966-1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4. 02



2024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고용노동부



Contents

01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① 청년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2
- (2)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3
- (3) 청년도전지원사업 4
- (4) 청년성장프로젝트 6
- (5) 일학습병행 8
- (6) 청년일경험지원 10
- (7)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2
- (8) 해외취업지원 13
- (9) 능력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문화 확산 16
- (10)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17
- (11)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8
- (12)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19
- (13)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1
- (14) 청년내일채움공제 22

② 고령자(신중년)

- (1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3
- (16) 고령자 고용지원금 24
- (17)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5
- (18) 중장년내일센터 26
- (19) 생애경력설계서비스 30
- (20)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32



③ 장애인

(21) 장애인 고용장려금	33
(2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34
(23)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35
(2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37
(2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38
(26)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39
(27)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40
(28)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41
(29)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42
(30) 중증장애인지원고용	43
(3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44
(32) 장애인 인턴제	47
(3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48
(34)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50
(35)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51
(36)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52

④ 여성(육아지원)

(37) 출산 육아 지원	53
(3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57
(39)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59
(4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60
(41) 직장여린이집 지원	61
(42)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63



Contents

02 외국인력 제도 운영 및 지원

(43) 고용허가제도	66
(4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68
(45)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	70
(46)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72
(47)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73
(48)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74

03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49) 고용복지+센터	76
(50)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79
(51)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80
(52)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82
(53)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83
(54) 국민취업지원제도	85
(55)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87

04 사업주 지원 장려금

1 고용장려금

(56) 고용촉진장려금	90
--------------------	----



②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57) 고용유지지원금	92
(58) 고용안정장려금(총괄)	94
(5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96
(6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98
(6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00
(6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103

③ 사회적기업

(63) 사회적기업 육성	105
---------------------	-----

④ 지역고용

(6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07
(65)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108
(66) 지역일자리 공시제	109
(67) 고용위기지역 지정	110
(68)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12
(69)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114
(70)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115

⑤ 기 타

(71) 고용영향평가제도	116
(72) 고용형태공시제도	117
(73) 고용노동통계조사	119
(74) 인력수급전망	121



Contents

05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75) 고용보험제도	124
(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126
(77) 구직급여·연장급여	127
(78) 취업촉진수당	129
(7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	130
(80) 자영업자 고용보험	131
(81) 실업크레딧 지원	133
(8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134
(83)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135

06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개인

(84) 국민내일배움카드	138
(8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139
(86)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140
(87)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141
(88)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	142
(89)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143
(90)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144
(91)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145



② 기업

(9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47
(93) K-하이테크 플랫폼	149
(94)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51
(9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153
(96)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155

③ 기타

(97)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156
(98)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59
(99)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161
(10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63
(101) 숙련기술 장려	164
(102) 직무능력은행제	166
(103)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168

07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① 노사관계

(104) 근로시간 면제제도	170
(105)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172
(106) 노동쟁의 조정	173
(107) 노사협의회	176
(108) 부당노동행위	177
(109)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179



Contents

② 노사협력

- (110)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181
- (111)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182
- (112) 상생연대 형성지원 185
- (113) 근로자 소통·상담·지원 커뮤니티 186
- (114)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187

08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① 근로조건 개선

- (115)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190
- (116)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92
- (117)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지원 196
- (118)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도 197
- (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200
- (120)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202

② 차별개선

- (121) 근로자 파견제도 203
- (12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207
- (123)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210
- (124)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211
- (125)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212



09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① 임금보장

(126) 최저임금제도	214
(127)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16
(128) 대지급금제도	218
(129)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220
(130)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221
(131)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222
(132) 무료법률구조지원	224

②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133) 퇴직연금제도	226
(134)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229
(13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230
(13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231
(137) 근로복지기금 지원	233
(138) 우리사주제도	235
(139) 근로자자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237
(14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239
(141)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241
(142)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242
(143) 근로자 문화예술제	244



Contents

10 산업재해 예방지원

(144) 업종별 재해예방	246
(145) 산업안전 대진단	248
(146)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249
(147) 유해작업환경 개선	251
(148) 근로자 건강보호	252
(149) 산재예방시설 용자	254
(150)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255
(151)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261
(152)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263
(153) 건설업체 안전관리 컨설팅	264
(154)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266
(155)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267
(156)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68
(15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70
(158)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확인서	271

11 산재근로자 지원

(159) 산재보험제도	274
(160) 산재보험급여	276
(161)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78
(16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79
(163)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280



(164)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281
(16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82
(166)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283
(167) 진폐위로금 지급	284

12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86
---------------------------	-----

1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298
-----------------------	-----



★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제도**

● **고용서비스 지원(채용·상담·정보제공)**

- (3) 청년도전지원사업 / 4
- (9) 능력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문화 확산 / 16
- (11)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18
- (39)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59
- (43) 고용허가제도 / 66
- (4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 68
- (48)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74
- (49) 고용복지+센터 / 76
- (51)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80
- (163)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 280

● **지원금, 융자 등 지원**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2
- (11)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18
- (14) 청년내일채움공제 / 22
- (1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3
- (16) 고령자 고용지원금 / 24
- (20)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 32
- (21) 장애인 고용장려금 / 33
- (2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34
- (23)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35



- (2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37
- (2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38
- (26)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39
- (27)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40
- (28)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 41
- (29)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 42
- (32) 장애인 인턴제 / 47
- (34)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50
- (35)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51
- (3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57
- (41) 직장어린이집 지원 / 61
- (56) 고용촉진장려금 / 90
- (57) 고용유지지원금 / 92
- (58) 고용안정장려금(총괄) / 94
- (5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96
- (6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98
- (6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00
- (6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103
- (63) 사회적기업 육성 / 105
- (6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107
- (65)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108
- (69)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114
- (70)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115
- (7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사업) 사업 / 130
- (83)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 135
- (111)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 182



- (115)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190
- (116)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92
- (130)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 221
- (13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231
- (137) 근로복지기금 지원 / 233
- (138) 우리사주제도 / 235
- (139)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237
- (149) 산재예방시설 용자 / 254
- (150)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255
- (151)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261
- (153) 건설업체 안전관리 컨설팅 / 264
- (16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 279

● 직업능력개발 지원

- (5) 일학습병행 / 8
- (9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147
- (93) K-하이테크 플랫폼 / 149
- (94)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151
- (9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153
- (96)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 155
- (102) 직무능력은행제 / 166



★ 재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제도

● 고용서비스 지원(상담·정보제공)

- (4) 청년성장프로젝트 / 6
- (42)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63
- (4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 68
- (45)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 / 70
- (46)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 72
- (47)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 73
- (48)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74
- (49) 고용복지+센터 / 76

● 지원금, 융자 등 지원

- (2)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3
- (2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38
- (27)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40
- (37) 출산 육아 지원 / 53
- (4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60
- (7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사업) 사업 / 130
- (83)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 135
- (129)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 220
- (13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222
- (132) 무료법률구조지원 / 224
- (139)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237



- (14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239
- (141)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241
- (142)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 242
- (143) 근로자 문화예술제 / 244
- (153) 건설업체 안전관리 컨설팅 / 264
- (154)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 266
- (155)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 267
- (160) 산재보험급여 / 276
- (16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282
- (166)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 283

● **직업능력개발 지원**

- (19)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30
- (84) 국민내일배움카드 / 138
- (90)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144
- (96)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 155
- (101) 숙련기술 장려 / 164
- (102) 직무능력은행제 / 166
- (103)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 168

★

취업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

● **고용서비스 지원(진로지도·직장체험·상담·정보제공)**

- (3) 청년도전지원사업 / 4
- (6) 청년일경험지원 / 10



- (7)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12
- (8) 해외취업지원 / 13
- (12)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 19
- (13)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21
- (14) 청년내일채움공제 / 22
- (17)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25
- (18) 중장년내일센터 / 26
- (3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48
- (36)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 52
- (39)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59
- (49) 고용복지*센터 / 76
- (50)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79
- (51) 구직자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80
- (52)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82
- (53)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83
- (54) 국민취업지원제도 / 85
- (55)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87
- (63) 사회적기업 육성 / 105

● 지원금 용자 등 지원

- (77) 구직급여·연장급여 / 127
- (78) 취업촉진수당 / 129
- (80) 자영업자 고용보험 / 131
- (81) 실업크레딧 지원 / 133
- (8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134
- (141)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241



● **직업능력개발 지원**

- (5) 일학습병행 / 8
- (19)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30
- (30)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43
- (3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44
- (84) 국민내일배움카드 / 138
- (86)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 140
- (87)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 141
- (88)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 142
- (89)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143
- (90)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144
- (98) 과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159
- (9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심사평가 / 161
- (10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163
- (102) 직무능력은행제 / 166
- (161)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278

★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 **고용서비스**

- (37) 출산 육아 지원 / 53
- (72) 고용형태공시제도 / 117
- (73) 고용노동통계조사 / 119
- (75) 고용보험제도 / 124



- (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126
- (97)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156

● 근로 및 노사 관계

- (104) 근로시간 면제제도 / 170
- (105)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172
- (106) 노동쟁의 조정 / 173
- (107) 노사협의회 / 176
- (108) 부당노동행위 / 177
- (109)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179
- (112) 상생연대 형성지원 / 185
- (113) 근로자 소통·상담·지원 커뮤니티 / 186
- (114)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 187
- (117)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지원 / 196
- (118)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도 / 197
- (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200
- (120)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 202
- (121) 근로자 파견제도 / 203
- (12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207
- (123)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 210
- (124)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 211
- (125)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 212
- (126) 최저임금제도 / 214
- (127)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16
- (128) 대지급금제도 / 218
- (133) 퇴직연금제도 / 226
- (134)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 229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 (144) 업종별 재해예방 / 246
- (145) 산업안전 대진단 / 248
- (146)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249
- (147) 유해작업환경 개선 / 251
- (148) 근로자 건강보호 / 252
- (152)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 263
- (156)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68
- (15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270
- (158)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확인서 / 271
- (159) 산재보험제도 / 274
- (164)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 281
- (167) 진폐위로금 지급 / 284

기 타

- (6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107
- (66) 지역일자리 공시제 / 109
- (67) 고용위기지역 지정 / 110
- (68)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112
- (71) 고용영향평가제도 / 116
- (74) 인력수급전망 / 121
- (110)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 181

01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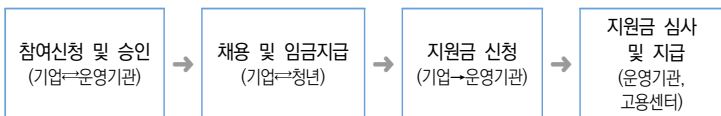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관련 홈페이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I 사업 목적

- 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은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I 사업 내용

-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지원절차)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2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66
 관련 홈페이지: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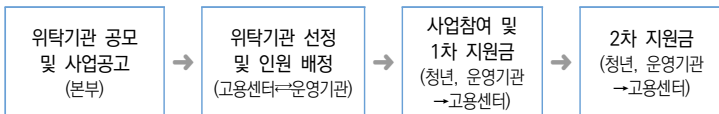
사업 목적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사업 내용

- (개요)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6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만 15세~34세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지원대상 중소기업 목록은 고용24에서 확인가능
- (지원내용) 취업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무
 -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4개월 이상 실업 청년, 고졸이하 학력, 보호종료아동 등 취업애로 청년을 전체 지원대상의 10% 할당하여 우선 선발함
-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라 선착순 접수
 -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 (신청절차) 「고용24」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 * 「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 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사업추진체계



3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 7494), 고용24(www.work24.go.kr)

I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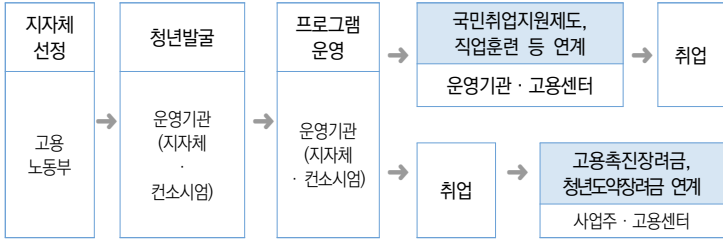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도전) 단기(6주)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15주, 25주) 프로그램

I 사업내용

- ❶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 ❷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❸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및 운영기관
 - (구직단념청년)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9,000명
-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운영비), 구직단념청년(수당 등)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구분	도전지원 프로그램	도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참여 청년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시 20~50만원,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운영 기관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월 8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시 10~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10~25만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 목적

-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사전 예방하고, 입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 등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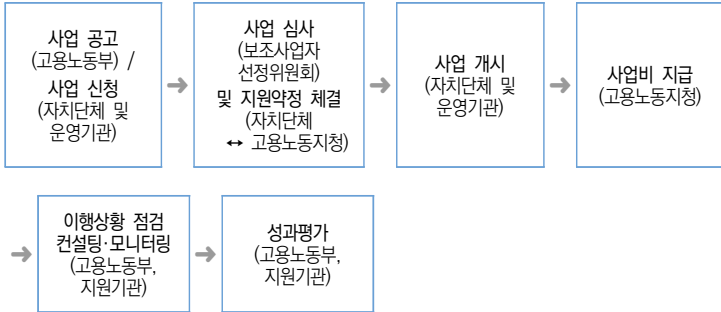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을 연계

- ① (인프라 제공) 청년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② (프로그램 제공) ▲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 심리적 소진 청년에게 심리상담 지원(1인당 최대 10회)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직장 적응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 적응지원 교육**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등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채용 후 1년 이내*인 신입직원(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 지역 내 산업, 기업 및 일자리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을 조정 가능

■ 사업추진체계



5

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일학습병행 홈페이지(www.hrd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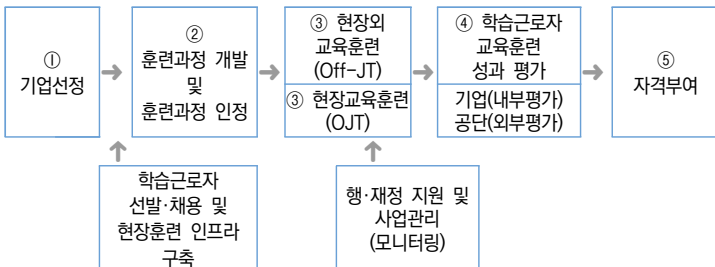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I 사업내용

- (선정 대상)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 (학습근로자 조건) 1년 이내 신규 입사자, 청년구직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 (지원내용) ▲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건설링 지원, ▲ 현장(외)훈련 훈련비, ▲ 훈련장려금, ▲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양성교육 지원
- (자격 부여) 훈련 수료 후, 훈련성과 평가 →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I 사업추진체계



▶ 참여 유형

구분	대상 및 유형		주요 내용
재직자 단계	단독기업형		개별 기업에서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 실시
	공동훈련센터형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실시
재학생 단계	고교 단계 (특성학교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을 통한 현장성 제고
	전문대학 단계 (전문대 2학년)	전문대단계 일학습병행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조기취업 유도
	대학교 단계 (4년제대 3~4학년)	IPP형	3~4학년이 학기제 등 방식(2~6月)으로 장기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 참여
後학습	P-TECH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

* P-TECH: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 주요 특징

-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 교육 운영방법 등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주도로 개발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교육훈련
 -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시간, 현장교사,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교육훈련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이에 따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 생산활동(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 습득한 직무능력을 산업현장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평가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학력 중심이 아님) → 자격의 통용성 확보

6

청년일경험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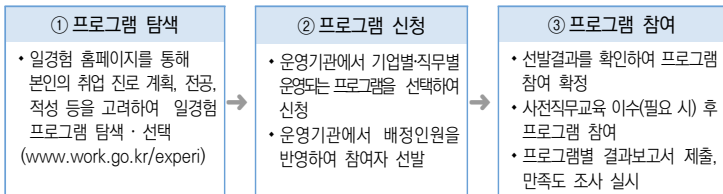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만관 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 * 세부사업에 따라 지원대상 특화 과정 운영
- (지원내용)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① (인턴형)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 지원(19,000명)
 - ② (프로젝트형)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 지원(6,000명)
 - ③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 경영차원에서 수행하는 일경험, 직무훈련 등 청년고용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원(8,000명)
 - ④ (기업탐방형)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 지원(15,000명)

I 사업추진체계



Ⅰ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별 주요내용

유형	인턴	프로젝트	ESG지원	기업탐방
목적	직무역량 강화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
기간	1~5개월 내외	2개월 내외	프로그램별 상이	5일 내외
대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서 과업 직접 수행 • 과업 수행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특별 수행 • 기업-운영기관에서 수행 과정 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 수행 • 운영기관에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 체험, CEO 및 현직자와의 대화 등
교육	사전 직무교육 (직업기초능력+직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직업기초능력 교육(OT)
지원 내용	(기업) 멘토수당 등 운영비 (청년) 참여 수당 등 (운영기관) 운영비	(기업) 코칭·심사 등 운영비 (청년) 참여 수당·활동비 (운영기관) 운영비	운영비 지원 (대기업 50% 매칭)	(기업) 사설이용 등 운영비 (운영기관) 운영비
인원	1만9천명	6천명	8천명	1만5천명

7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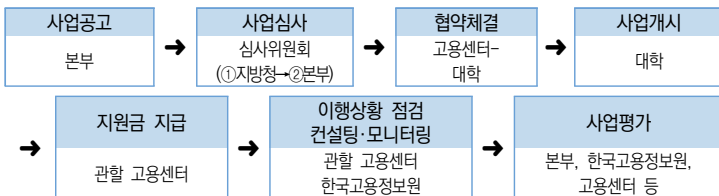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기능을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한 청년 친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의 취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 고용서비스 제공 대상: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생(2년 이내), 지역청년
- (사업방식)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과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 * 거점형: 7.2억(정부 4.2억, 보조율 58.3%), 일반형: 3억(정부 2억, 보조율 66.7%)
 - * 거점형: 지역산업 수요, 대학 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역청년 위주)
-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사업추진체계



■ 추진현황

- 전국 99개교('23년 기준, '24년 사업 규모는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24년 사업예산 377억)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홈페이지 참조

8

해외취업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

■ 사업목적

-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K-Move 스쿨), 해외 취업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지원

■ 사업내용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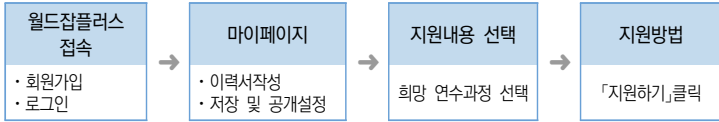
- (목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 취업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K-Move스쿨

- (목적) 양질의 해외일 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직무교육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4년 3,100명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원(연수기관 지급)
* 1인당 최대 트랙 I 과정(300시간 이상) 800만원, 트랙 II 과정(800시간 이상) 1,350만원, 대학 연합과정(600시간 이상) 1,200만원 지원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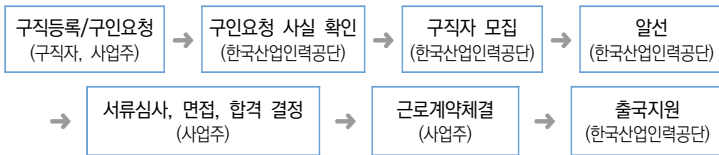
①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로 온라인 신청



② 선발방법: 연수과정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

해외취업알선

- (목적) 양질의 해외일자리 발굴 및 해외취업 희망자와 구인업체간의 알선 지원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 사업추진체계



국내 해외취업센터

- (주요내용) 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상시채용관 운영 (면접 지원),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지원
- (이용방법) 직접 방문 또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예약 가능
 - *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선릉역 1번출구)
 - *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시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르즈 빌딩 6층(시청역 1번출구)

해외 K-Move 센터

- (주요내용) 해외 코트라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 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등
- (현황) 일본(도쿄, 오사카, 나고야), 미국(LA, 뉴욕),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중국(베이징), 캐나다(밴쿠버), 호주(시드니), 유럽(프랑크푸르트), 중남미(멕시코시티), 중동(두바이), 싱가포르, 자카르타, 홍콩 등 16개소
- (이용방법)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 K-Move센터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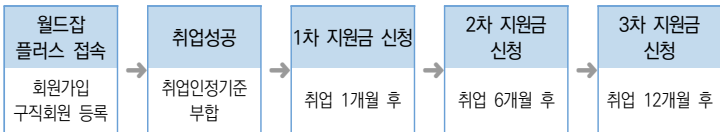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목적)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 ① 만 34세 이하, ②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이하 가구원, ③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등록자, ④ 취업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취업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

(단위: 만원)

계	취업 1개월 후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6개월 후 (2차 지원금 신청)	취업 12개월 후 (3차 지원금 신청)
500	250	100	150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93)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정채용지원부(☎ 052-714-8858)
 관련 홈페이지: NCS 종합포털(www.ncs.go.kr)-공정채용

■ 사업 목적

-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채용시스템을 확립하여,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채용문화 확산

■ 사업 내용

- 우수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정채용제도에 대한 컨설팅 제공
 - * 전문 컨설턴트가 개별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체계화한 능력중심 채용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정채용제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용관리시스템 등 지원
 - 채용담당자(CEO, 인사담당자 등) 대상 능력중심 공정채용 교육, 면접관 양성·교육 및 지원, 온라인 채용관리 플랫폼 무상지원 등
- 기업들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안내하는 「공감채용 가이드북」제작·보급
- 공공·민간의 공정채용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홍보하는 “공정채용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

10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교(☎ 044-202-7443)

■ 목적

-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적용범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 채용단계별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채용광고 및 지원서 접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 금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금지 *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몸무게·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채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 고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채용 확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여부의 고지) 채용대상자를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 고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서류 보관·반환 청구·반환 소요비용 부담·파기 관련 사실 등을 채용여부 확정 전 구직자에게 고지, 채용 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반환

11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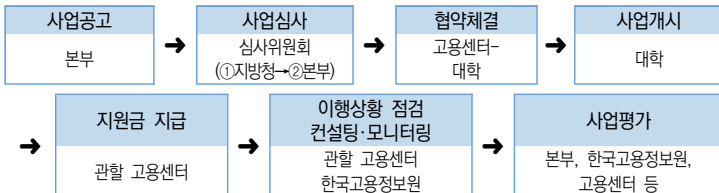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II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사업방식) 대학은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 (지원내용)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 * (빌드업 프로젝트) 1:1 상담을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하고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수립 및 청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대학 저학년 중심)
 - * (점프업 프로젝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IAP 수립, 이에 따른 훈련·일경험 연계·취업스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1년간 사후관리 및 참여수당 제공(대학 고학년 중심)

III 사업추진체계



IV 추진현황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24년 50개교(변동 가능)운영 지원('24년 사업 예산 389억원)

12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www.moel.go.kr)

사업목적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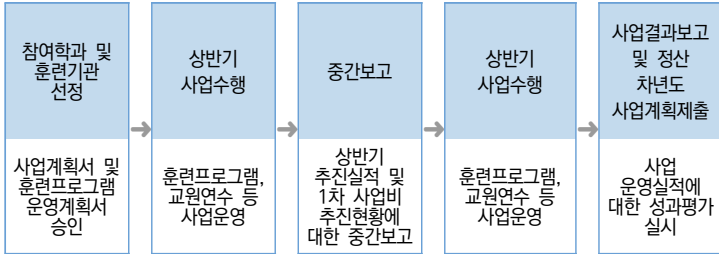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승인을 받은 학과 또는 신기술 훈련 지원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과
- (지원내용) 신기술·신산업분야로 교과과정을 개편한 직업계고 학과 신입생을 재학 3년간 정규교육과정과 연계,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민간기관 훈련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1~3학년)으로 지원

* 학과당 8천만원 내외, 연차별 신규 학년이 추가되는 경우, 연계 훈련기관의 훈련비와 운영비 추가 지원(1개 학년 당 훈련비 5천만원, 운영비 400만원 추가 지원)

-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민간 훈련프로그램(연 100시간 이상) 지원
- 디지털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디지털 훈련과정 의무 이수
- 교사의 신기술분야 전문성 및 교수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 등
- (훈련방식) 1~3년차 단계적 지원
 - (1년차) 신기술 기초지식 및 실습 위주 훈련(디지털기초훈련 의무 편성)
 - (2년차) 신기술 전문지식 훈련 및 관심 제고(특강, 멘토링, 경진대회 등)
 - (3년차) 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산업계 수요 반영)

Ⅰ 사업 추진 절차



* 전담 운영지원 기관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및 학과 컨설팅 수시 진행

13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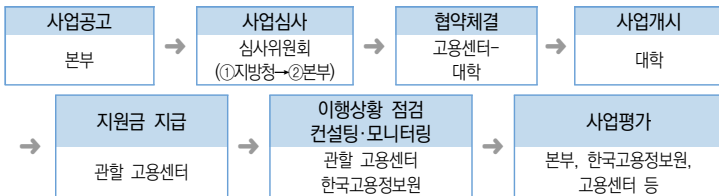
사업목적

- 고졸 청년의 취업 가능성 제고 및 구직 단념·고립 전환 사전 방지를 위해 고교 때부터 체계적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학교 재학생
 -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1~3학년), 일반고 비진학 청년(2~3학년) 등
- (지원내용) 고교 재학생 대상으로 진로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졸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제공
 - * ① 시기반 직업·진로탐색 지원 ② 개인 맞춤형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지원③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진로·직업체험 기회 제공 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⑥ 장기성장로드맵 마련 등
- (운영 기관) 대학(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개교

사업추진체계



추진현황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24년 20개교(변동 가능)운영 지원('24년 사업 예산 62억원)

14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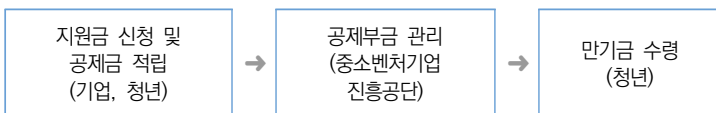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 지원, 중소기업에는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 지원
 - * '24년 신규지원은 중단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23년까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가입자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 ('23년 가입자 기준)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 청년, 기업: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 '22년 이전 가입자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I 사업추진체계



1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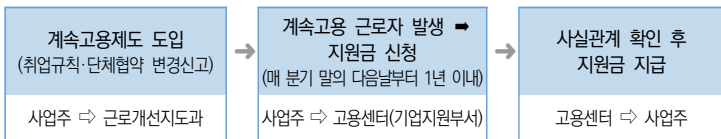
목 적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 내용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 지원요건:
 -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 ③ 재고용: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지원절차



16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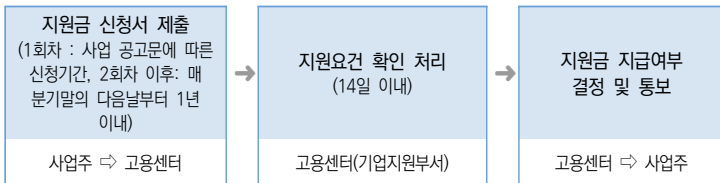
I 목 적

-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I 사업 내용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요건: 고용보험성립일부터 신청분기 전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 단,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 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I 지원절차



17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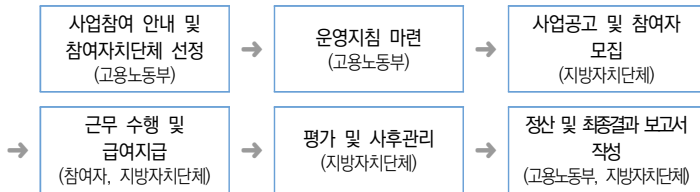
사업목적

-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 지원내용: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 활동분야: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금융, 사회서비스, 문화 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13개 분야

사업추진체계



■ 사업목적

-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도모

■ 사업내용

- 운영기관: 전국 31개소(민간센터 19개소, 노사발전재단 12개소)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구직자 및 사업주
- 지원내용
 - ▶ 중장년 지원
 - **(생애경력설계)**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재취업 활동 및 경력관리 지원 **(전국 31개소)**
 - * 「기초, 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일자리, 직무교육, 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재취업 지원)** 고용복지+센터(중장년창구) 및 중장년센터에서 중장년 유형에 따라 전직지원 및 재도약 프로그램 제공 **(전국 31개소)**
 - * ▲ (퇴직예정자 전직지원) 심층상담-전직준비도 검사-역량진단-교육훈련-취·창업 정보 제공 등
 - ▲ (구직자 재도약 지원) 심층상담-교육훈련-취·창업 정보 제공-취업 알선-취업동아리-사후관리
 - **(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 지자체의 예산 대응지원 등을 통해 취업연계 프로그램, 직무교육, 직업훈련, 중장년 고용기업 지원금 지원 등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 19개소)**
 - **(산업별 특화서비스)** 지역별 주요 산업을 반영, 관련 산업별 협회 등과 함께 직업정보제공, 직무교육, 취업지원 서비스 등 제공 **(재단 1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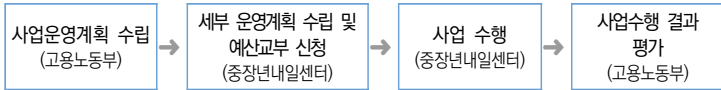
-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중장년센터 내 '청춘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인문·여가·문화 등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국 17개소)

* 독서·글쓰기 등 자기계발, 여가문화, 정체성 탐색·자존감 회복·심리 치유·관계 개선·인생 설계·직종별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강연, 체험, 탐방, 세미나, 문체부 협업)

▶ 사업주 지원

- (사업주 지원 패키지) 중장년층 고용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①고령자 계속고용·신규채용 컨설팅(지원금 연계), ②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훈련, ③'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재단 12개소)

■ 사업추진체계



중장년내일센터 운영현황 (전국 31개소, '24.1월 기준)

● 민간센터 19개소

운영기관명	소재지	대표 연락처
중장년내일센터 (한국경영학산중소기업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3층 (창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2-2004-7340
중장년내일센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동 202호 (상암동)	02-3153-7960
중장년내일센터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49, 2층(기능동,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37-2719
중장년내일센터 (고양상공회의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A동 4층 (장항동, 라페스타)	031-901-9197
중장년내일센터 (파주상공회의소)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8층 (금촌동,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071-4245
중장년내일센터 (안산상공회의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0 안산상공회의소 A동 3층(고잔동)	031-410-3031
중장년내일센터 (평택상공회의소)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2층 (이충동,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646-1046
중장년내일센터 (부산광역시총협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12층 (양정동, 양정타임스퀘어)	051-647-0453
중장년내일센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60, A동 3층 (무거동)	052-277-9491
중장년내일센터* (경남경영자총협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28번길 6, 센트럴빌딩 5층	055-266-8317
중장년내일센터 (한국커리어)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31길 6-1, 보배빌딩 2층	055-632-2254
중장년내일센터* (경북경영자총협회경북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회양대로 711(상도동), 대운개발빌딩 3층	054-727-2020
중장년내일센터 (경북경영자총협회)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118, 3층(송정동,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4-461-5519
중장년내일센터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1층 (북동,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2-609-8964
중장년내일센터 (목포상공회의소)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2층 (상동,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1-280-0556
중장년내일센터*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 순천시 우석로 7, 2층 (덕월동,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061-741-0096
중장년내일센터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6층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042-253-7051
중장년내일센터* (충북경영자총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6번길 7(송송동), 직지사미트타워 908호	043-270-7500
중장년내일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5층	041-559-5766

* 민간센터 중 충청문화공간 운영기관(5개소)

● 노사발전재단 12개소

운영기관명	소재지	대표 연락처
중장년내일센터(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5, 3~4층 (준타워)	02-6350-1500
중장년내일센터(서울 서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층(BYC하이시티빌딩)	02-3488-1900
중장년내일센터(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현대해상빌딩 3층	032-421-8301
중장년내일센터(경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3층 (권선동, 안동빌딩)	031-8014-8500
중장년내일센터(강원)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28, KT링크스빌딩 2층(단구동)	033-735-0971
중장년내일센터(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4, 11층(흥국생명빌딩)	051-860-1300
중장년내일센터(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44, 2층 (삼산동,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052-289-8975
중장년내일센터(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7M층(동인동2가)	053-550-3000
중장년내일센터(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4층 (누문동, 교보빌딩)	062-531-5712
중장년내일센터(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1, BYC빌딩 5층(호자동2가)	063-222-1600
중장년내일센터(충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15층 (탄방동, 한국고직원공제회대전회관)	042-489-3820
중장년내일센터(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3층(이도동,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2-4060

* 노사발전재단센터는 12개소 모두 청춘문화공간 운영

19

생애경력설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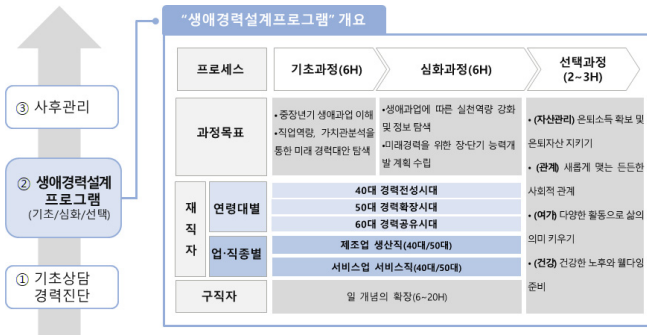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사업목적

-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참여자 연령·취업여부·중상 업종 등에 따른 생애 과업 이해·직업역량·가치관 분석 등을 통해 미래 경력 대안 탐색 등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

사업내용

- 운영기관: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재직자)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미래 경력설계 지원
 - (구직자)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미래 경력 탐색·재설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기초, 심층상담으로 경력 진단 → 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 → 일자리, 직무교육, 훈련 연계 → 사후관리」 등 중장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기초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재직자	연령대	3h	3h	3h	3h	2~3h
	40대 경력전성	경력관리	변화관리	평판 및 네트워킹 관리	성과관리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50대 경력 확장	나의생애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60대 경력 공유	능동적인 인생을 위한 숨고르기	삶의 가치 발견하기	삶의 균형 잡기	100세 인생 준비를 위한 뛰어들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구직자	1.5~5h	1.5~6h	1.5~3h	1.5~6h	2~3h	
	인생 들여다보기	인생 되돌아보기	제 2인생 계획하기	제 2인생 실행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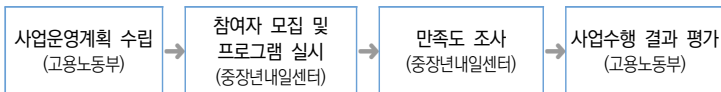
※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집단으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등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 온라인 교육

- 온라인으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및 전직스쿨 프로그램 수강 가능

* www.elifeplan.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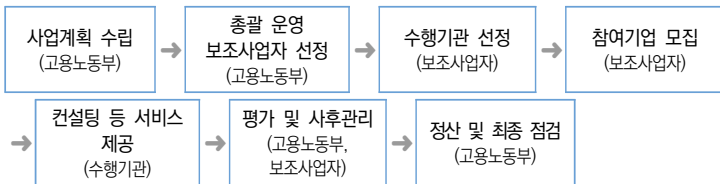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년 고용 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주(300인 이상 기업)
- 지원내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컨설팅 지원
 - 기업 인사 담당자 등에 대한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운영 관련 교육 제공
 - 업종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업추진체계



21

장애인 고용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I 사업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8%)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구 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2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의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I 사업추진체계



2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I 사업목적

-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 (지원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해당연 도	구분	지급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1년)
2022년 발생분 까지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I 사업추진체계



23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I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민간기업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1회, 최대 5천만원)

■ 사업추진체계



2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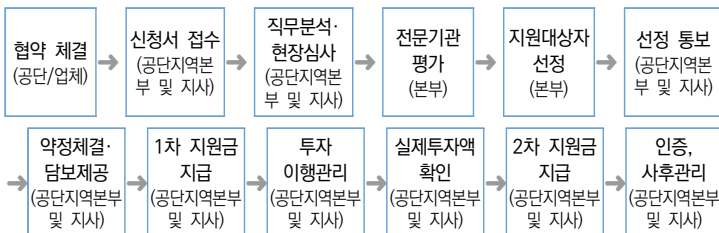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형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2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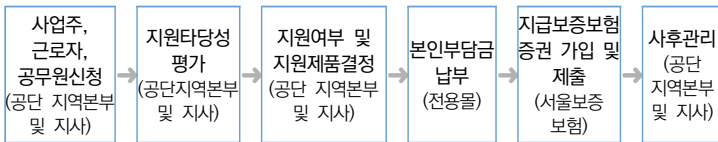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자, 장애인인 사업자(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지원내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 한도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함
- 지원조건: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I 사업추진체계



26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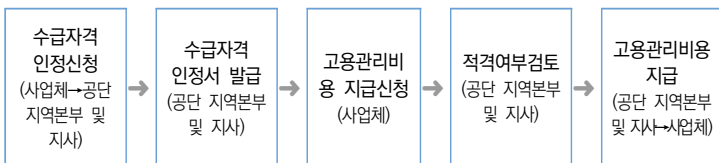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추진체계



27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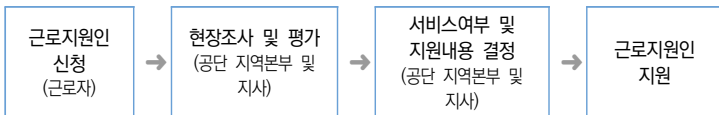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단가: 시간당 9,860원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832원)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 사업추진체계



28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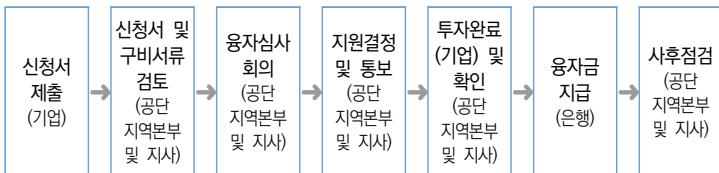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융자를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동안 이자차액 보전
 -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생산라인 조정비용

I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29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I 사업목적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을 줄여주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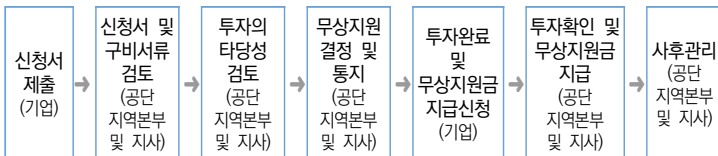
II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근로자 10명·20명 미만 시 2천만원 한도 * 20명 이상 시 4천만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III 사업추진체계



30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I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 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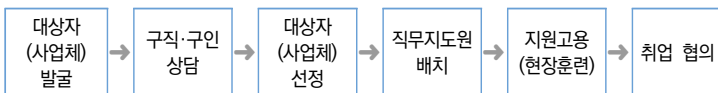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지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지원

구 분		지원 금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일비	18,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업주보조금		19,340원/1일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직무지도원: 최저임금 준용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 훈련생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직업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 실시

I 사업추진체계



3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I 사업목적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I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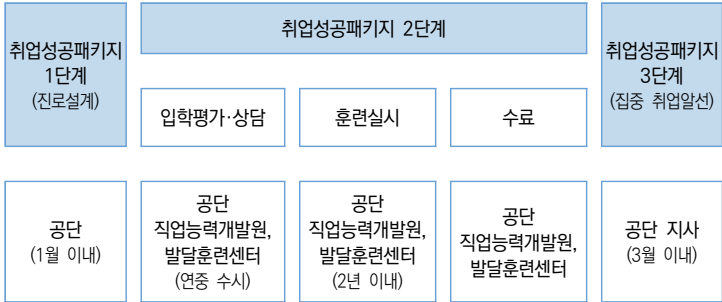
-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원(5), 훈련센터(맞춤4, 디지털6, 발달19),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 지원내용: 훈련수당 지급 (※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¹⁾
 - 맞춤훈련센터²⁾ 및 디지털훈련센터³⁾
 - 발달장애인훈련센터⁴⁾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교사에게 교사수당 지급)
 -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 *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 등에 따라 지원

구 분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취성패 참여자 월 28.4만원)	
	훈련장려금	교 통 비	월 5만원
		식 비	월 6.6만원
교사수당(공공훈련기관에 한함)		훈련생 1인당 2만원 (최고 10만원 한도)	

- 1) 직업능력개발원 :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 2) 맞춤훈련센터 : 서울, 전주, 창원, 제주
- 3) 디지털훈련센터: 구로디지털, 판교디지털, 광주디지털, 인천디지털, 천안아산디지털, 대구디지털센터
- 4) 발달장애인훈련센터 : 서울, 서울남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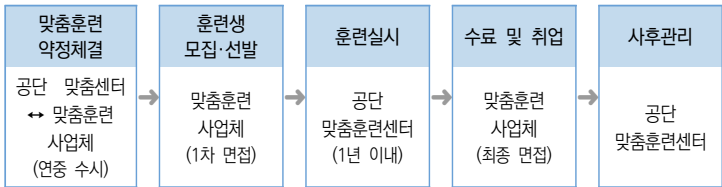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

-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규훈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장애인훈련생 선택사항임

- 맞춤형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형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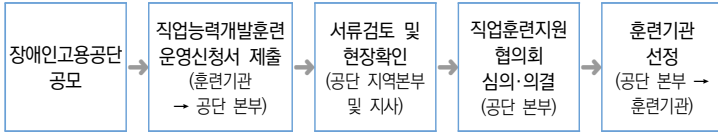
* 디지털훈련센터: IT 수준별 훈련과정과 기업 맞춤형훈련 연계 운영

↳ (IT수준별 훈련) 훈련생 역량 수준별 IT 정규 훈련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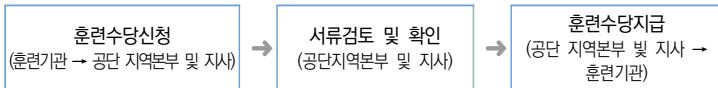
(기업 맞춤형훈련)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맞게 훈련과정의 탄력적 편성

- 공공·민간훈련기관 위탁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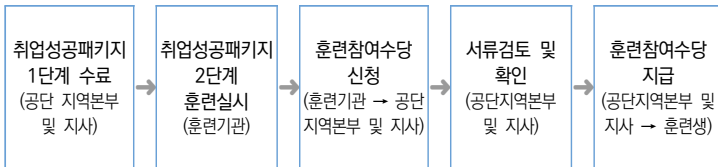
- 훈련기관 선정(민간훈련기관)



- 훈련수당 지급(공공훈련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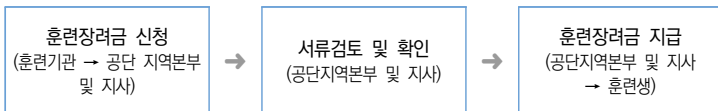


- 훈련참여수당 지급(민간훈련기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장애인훈련생 선택사항임

- 훈련장려금 지급(민간훈련기관)



32

장애인 인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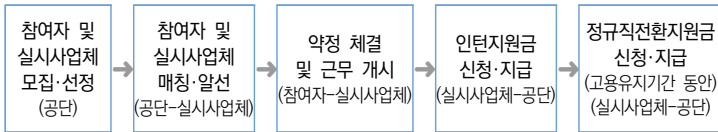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중점지원대상**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총 8개 장애유형
 -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지원요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및 가입 예정 1인 사업장
- (지원내용)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인턴 채용 사업체에 인턴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 지원(최대한도 월100만원, 최대 6개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유지 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 추가 지원(최대한도 80만원, 최대 6개월)

I 사업추진체계



3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I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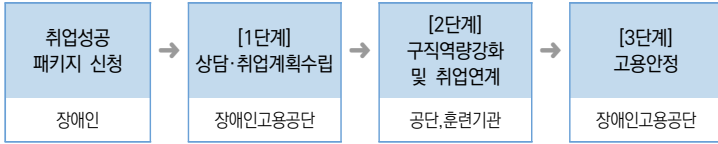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II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 (지원내용)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집중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원(1단계 필수) 지급
2단계 (구직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1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코칭프로그램 2회 이상 이수	참여수당 5만원 ~ 10만원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추가) 기타 훈련과정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최대 24개월 지급
		취업브릿지 프로그램 이수	참여수당 5만원 ~ 10만원
		[저소득층] 구직활동 계획 이행시 [저소득층] 구직활동 중 조기취업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100만원
3단계 (고용 안정)	1단계 수료 또는 2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 사업추진체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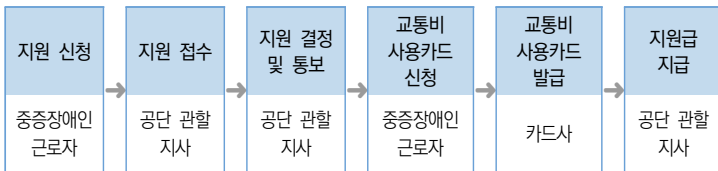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1유형)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2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 전용카드(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 시 정산 후 계좌로 지급
 - * (U&I우리카드) 후불교통기능 기반 체크카드(우리은행 지점, APP, 홈페이지 등 신청) (우체국 동행체크카드) 선불충전형 체크카드(우체국 지점 방문발급)

■ 사업추진체계



35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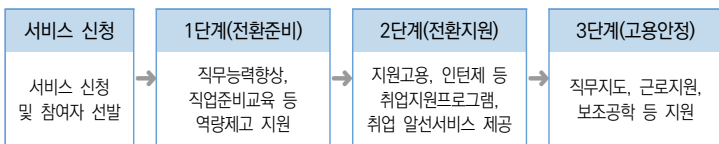
사업목적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고용전환촉진수당(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지원금(최대 월 90만원, 3년간 지원) 지급

사업추진체계



36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I 사업목적

-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직업능력 및 작업환경 요구에 따라 고용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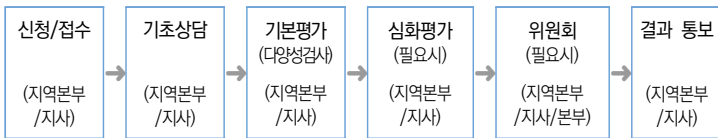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고용서비스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천 및 필요한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출퇴근 비용지원, 현장평가, 직업훈련

** (전문기관 연계) 심리지원 프로그램

I 사업추진체계



37

출산 육아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www.work24.go.kr)

I 사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제도 활용 도모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II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 기준법 위반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 하고, 청구한 경우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동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①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최초 60일 (다태아 75일)</th> <th>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th> </tr> </thead> <tbody> <tr> <td>우선 지원 대상 기업</td> <td>· (정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td> <td>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td> </tr> <tr> <td>대규모 기업</td> <td>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td> <td>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정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정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최대 89일, 출산에 한해 다태아 119일)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 시행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유산·사산휴가의 경우 '23.7.1.이후 계약만료부터 적용) ③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예술인·노무 제공자 출산전후 휴가 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지급액: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하한액: 상한 210만원, 하한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①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 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6+6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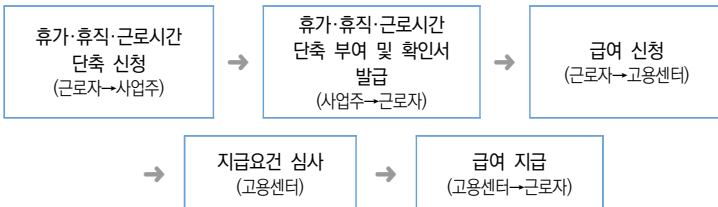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2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허용예외사유>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 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주당 최초 5시간분) 월 통상 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동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지원(상한액 401,910원) * 단, 사업주는 최초 5일분 통상 임금과 401,91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3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 고용안정을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특례 적용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① 출산전후(휴·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피보핍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출산전후(휴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대체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39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인재채움뱅크 홈페이지(<http://www.matchingbank.career.co.kr>),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출산·육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유로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대체인력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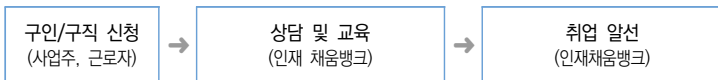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대체인력 구인 사업장 및 구직자
- (지원내용) 기업에는 맞춤 인재를 추천하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육아의 병행 등을 위해 기간제, 단시간 일자리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적합한 대체인력 일자리를 알선
 - (기업) 대체직무에 적합한 구직자 알선 및 사후관리서비스
 - (구직자) 무료 소양 교육,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재취업 알선 등

〈대체인력 채용 관련 지원제도〉

종 류	지 원 내 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 사업추진체계



4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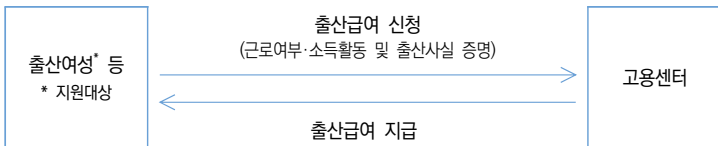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지원내용) 총 150만원
-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41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대체인력뱅크(수도권 ☎ 1577-0221, 지방권 ☎ 1577-8505)
 고용24(www.work24.go.kr), 민간 대체인력뱅크 홈페이지(http://www.대체인력뱅크.com)

사업목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함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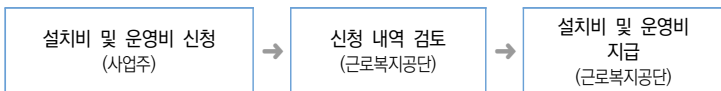
-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대규모기업	단독		3억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독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공동	우선지원대상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동)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임차비		3억원	소요비용의 80%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운영비	인건비 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138만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
-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 설치공사 지원,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42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사업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 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업내용(새일센터)

구분		내용	사업 수행
고용 노동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59개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여성 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인턴연계	인턴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 (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취·창업지원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신청절차

-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 1544-1199)

— 2024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02

외국인력 제도 운영 및 지원



43

고용허가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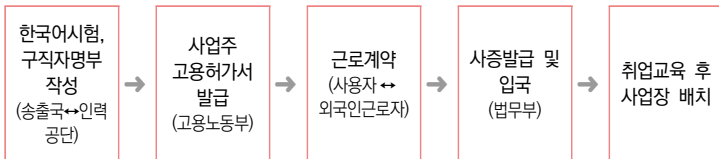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I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 고용허가제(E-9)

- 허용 기업: 중소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임업, 광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 * 다만, 제조업(300인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은 고용허가제 적용
 - **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등(향후 변경 가능)
-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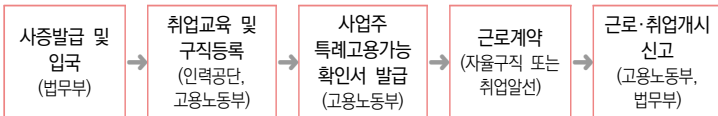
- 허용 업종: 허용제의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인력 고용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 및 연금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50	수상 운송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단, 허용제의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4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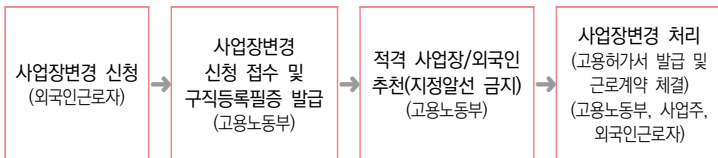
I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보호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 사업장변경 횟수
 -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I 사업추진체제



- (외국인근로자)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45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www.work24.go.kr)

I 사업목적

-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동일업종·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I 사업내용

-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 ①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적용에 해당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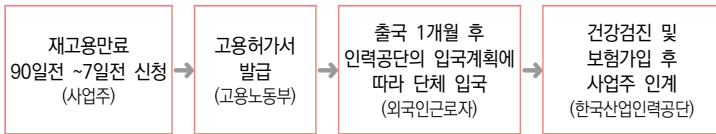
〈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

-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 ② 동일업종(대분류)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③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④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E-9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 ③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 ④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주요혜택)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1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1년10개월간 허용

■ 사업추진절차



46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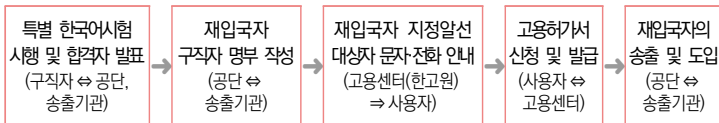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재고용만으로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적용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I 사업내용

- (요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 (입국)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출국 후 6개월 이후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지정알선)
 - *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입국 가능

I 사업추진체제



47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사업목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을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외국인력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상담센터(콜센터, ☎1577-0071) 설치·운영
 -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와 갈등, 일상생활 고충,
언어소통문제 등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문
통역 지원
 - (종합체류지원 서비스 지원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축산·어업 등
소수업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역순회 상담서비스 및 국가별 커뮤니티 현장
지원 서비스 지원
 - (사업주 교육) 고용허가제, 노동관계법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교육 실시
 -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적응력 강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전 지방관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해소, 지원방안 등 협의
- *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으로 구성

48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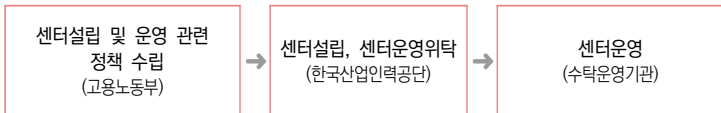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고용·체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
 -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 기본 정보 안내

I 사업추진체계



※ 현지어 상담원 배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 전화로 유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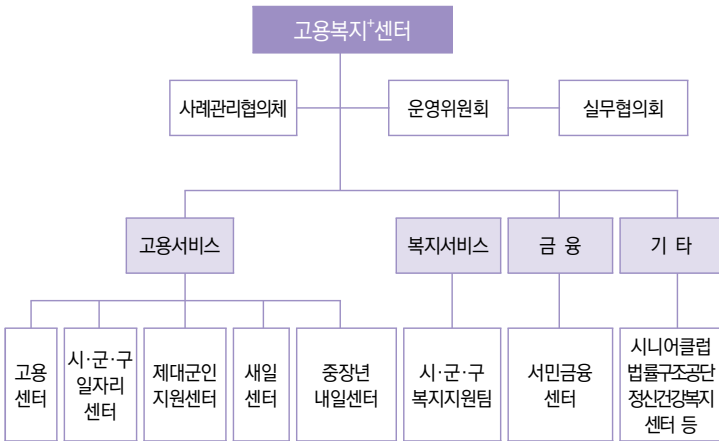
03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 사업 개요

- (목적)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업무 체계도) 각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협의체로,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연계·통합



주요 제공 서비스

서비스 분류	참여기관	주요 서비스	
고용 서비스	종합 서비스	고용센터	실직자 구직급여 및 재취업 지원,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정 사업 등 종합 고용 서비스 제공
	지역맞춤형 서비스	시·군·구 일자리센터	지역별 구직자 취업지원 및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별 특화 서비스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중장년 내일센터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제대군인 지원센터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예정) 군인에게 진로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안착 지원	
	시·군·구 복지공무원	사회 복지 서비스 상담·신청·접수, 공공·민간 복지 자원 연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 등 상담·제공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민, 영세 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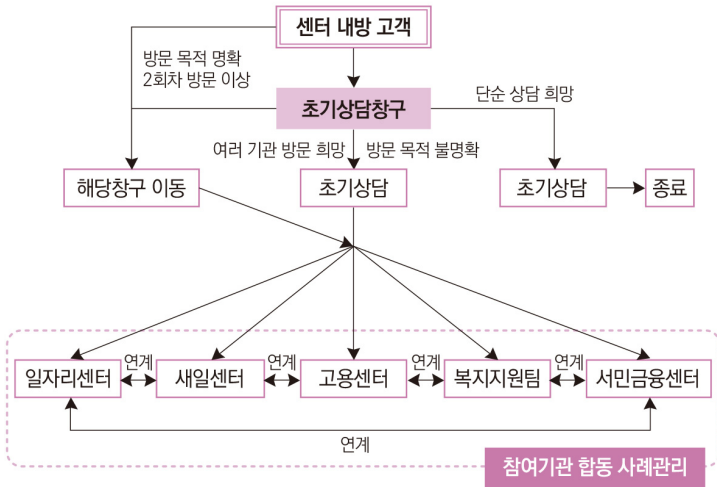
운영 방향

- (통합 서비스)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 도모
-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필요·적합한 고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신청·수령 가능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등을 조기 해소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빈곤층을 고용의 영역으로 끌어 내어 탈수급 지원
 - 차상위계층 등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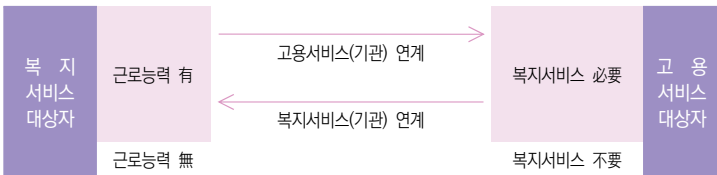
- (협업) 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서비스 프로세스

- (프로세스)



- (서비스 연계)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 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



50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개요

- 구직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구직자-일자리 1:1 매칭	구인 또는 구직신청을 받아 구인자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동행면접	일 경험이나 면접경험, 자신감 부족 등으로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
채용대행서비스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 심사서류의 접수와 기초심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48개 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하여 현장채용행사와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의 서비스를 집중 지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자는 구직신청서를, 구인기업은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구직자) 및 기업회원(기업)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 또는 구인신청 등록

Ⅰ 사업개요

- 인구·산업구조 변화, 취업·채용 형태 다양화, 일에 대한 인식 변화, 온라인·디지털 서비스 확산 등 고용서비스 여건 변화에 대응 필요
⇒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 지원 →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약자 안 전망 강화, 빈일자리 해소 등을 위해 **맞춤형 취업·채용 지원 강화**

Ⅱ 서비스 내용

- (구직자) ①**잡케어(Job Care)** 기반 개인별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제공, ②**1:1 심층 상담**을 통한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③**경력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제공** 등
- (기업) ①**일자리 특성, 구인 직종 및 임금·복지 수준** 등을 고려한 **기업 유형 분류**, ②**기업 유형에 맞는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인지도 제고** 등 지원 **정책 맞춤 연계***
* 고용부 및 관계부처와의 연계·협업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Ⅲ 지원대상

- (구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지도 및 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구직자 등
- (기업)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등

- ❖ 구인난으로 신문고에까지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에 **인지도 개선+훈련+채용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
 - 온라인 기업설명회, 실업급여 수급자·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기업 안내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연계 등 HRD 지원 → 재직자 역량강화
 - 뿌리기업 공동 채용행사 진행 → 66명 채용(목표인원 초과)
 - ❖ 각각 다른 취업 어려움을 가진 남매 구직자를 **심층상담·진단하고 취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을 제시**
 - ① **강박장애, 장기실업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누나** → 심리안정 지원, 잡케어 직무특성 분석, 온라인 창업 훈련제공
 - ② **공황 장애로 면접이 두렵고 직업설계가 막막한 동생** → 모의면접으로 자신감 향상, 성취 경험을 통한 온라인 활동(숨*, *몽 등 재능공유) 지원, 캐드 분야 온라인 훈련지원
- ☎ (누나)경력사무원 취업 및 온라인 창업 성공, (동생)자신감 회복, 장기 구직계획 수립

■ 신청 및 문의

• (구직자)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서울	02-2004-7075	평택	031-646-1231	포항	054-280-3016
서울강남	02-3468-4748	춘천	033-250-1910	구미	054-440-3396
서울동부	02-2142-8931	강릉	033-610-1936	영주	054-639-1124
서울서부	02-2077-6076	원주	033-769-0911	안동	054-851-8053
서울남부	02-2639-2457	태백	033-550-8643	광주	062-609-8761
서울북부	02-2171-1902	영월	033-371-6277	전주	063-270-9250
서울관악	02-3282-9240	부산	051-860-2058	익산	063-840-6573
인천	032-460-4714	부산동부	051-760-7111	군산	063-450-0623
인천북부	032-540-5815	부산북부	051-330-9980	목포	061-280-0505
부천	031-412-6922	창원	055-239-3514	순천	061-720-9199
의정부	051-860-2058	울산	052-228-1982	대전	042-480-3939
고양	051-760-7287	김해	055-330-9527	청주	043-230-6705
수원	031-231-7903-4	진주	055-760-6790	천안	041-620-7401
성남	031-739-4949	통영	055-650-1815	충주	043-850-4021
안양	031-463-0748	대구	053-667-6089	보령	041-930-6258
안산	031-412-6922	대구서부	053-605-6510	서산	041-661-5612

• (기업)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서울	02-2004-7075	평택	031-646-1231	포항	054-280-3013
서울강남	02-3468-4815	춘천	033-250-1915	구미	054-440-3311
서울동부	02-2142-8503	강릉	033-610-1941	영주	054-639-1127
서울서부	02-2077-6075	원주	033-769-0906	안동	054-851-8028
서울남부	02-2639-2400	태백	033-550-8643	광주	062-609-8736~9
서울북부	02-2171-1770	영월	033-371-6268	전주	063-270-9140
서울관악	02-3282-9214	부산	051-860-2135	익산	063-840-6573
인천	032-460-4830	부산동부	051-760-7288	군산	063-450-0623
인천북부	032-540-5818	부산북부	051-330-9893	목포	061-280-0590
부천	032-320-8946	창원	055-239-0945	순천	061-720-9170
의정부	031-828-0927	울산	052-228-1952	대전	042-480-3949
고양	031-920-3932	김해	055-330-9535	청주	043-230-6763
수원	031-231-7909~11	진주	055-760-6706	천안	041-620-7485
성남	031-739-3109	통영	055-650-1815	충주	043-850-4006
안양	031-463-0745	대구	053-667-6095	보령	041-930-6291
안산	031-412-6923	대구서부	053-605-6510	서산	041-661-5676

52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I 사업개요

-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취업촉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의지를 향상시키고, 구직기술 습득을 도와 구직자의 취업가능성 제고



II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로서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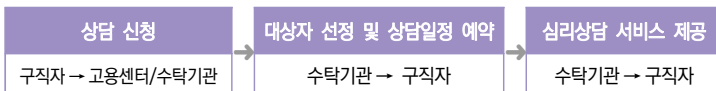
우
선
지
원
대
상

- ① 최근 2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생활 여건 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
- ② 실직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 증세 등을 보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신 분
- ③ 구직자 스스로 상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리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III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IV 지원절차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제공

53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개요

- 구직자의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직업정보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종류 및 내용

- (집단상담 프로그램) 12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취업의욕 및 취업 기술 향상 등을 위해 3~4일 간 운영하는 집단상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성 취	구직자 전체	• 취업의욕 증진, 취업정보 수집, 지원서류 작성법, 면접 실습 등
[CAP@] 청년층취업지원	15~29세 청년	• 진로 결정을 위한 직업탐색, 강점 강화, 면접 실습 등
[Hi] 고졸청년 취업지원	고졸(예정)청년층	• 고졸 청년층의 자기 탐색, 일자리 탐색, 구직기술 향상
[청취력] 청년취업역량	19~34세 청년구직자	• 역량 기반 채용 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 개발계획 수립
취업희망	취약계층 구직자	•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40대 취업역량	40대 구직자	• 40대 구직자들의 진로 전환 및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역량 강화, 취업 의지 고취, 구직기술 향상
신중년 재취업설계	신중년(5060)	• 본인의 특성과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재취업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도록 지원

-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 5명 이내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취업역량(구직의욕) 강화를 집중 컨설팅하는 온라인 전용 프로그램, 3~4일 간 운영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청년취업 ON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직무군별(경영사무/영업/IT) 청년층 구직기술 컨설팅 중심 프로그램 · 직무군별 주요 역량이해와 관련된 개인 경험 연계를 중심으로 구직기술 강화 지원
내일또다시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치·정비·생산직종 및 사회복지·돌봄직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 재취업을 위한 정보탐색역량 강화에 초점
마음톡톡 심플	취업취약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진로 스토리 점검하기, 취업 방해 요인 탐색 등을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취업 컨설팅	조선 반도체 취업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체 업종 취업희망자를 위한 직무분석 및 구직기술 중심 컨설팅 프로그램

- (단기상담프로그램) 구직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만 선택하여 참여

구분	시간	내용
단 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각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스트레스 다루기, 청년(마음의 힘 기르기, 나를 이해하기, 비즈니스 매너), 신중년(잘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는, 나를 이해하기, 직장 내 행복한 대화 이끌기) 등 총 7종
취업특강 프로그램	각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직업심리검사와 직업 선택, 근로기준법, 성공하는 취업정보수집 등 8종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구직자) 및 기업회원(기업)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별 운영 센터와 참여 희망 시기를 선택하여 신청

5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사업목적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I 유 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3년)	중위소득 120% ↓	5억원 이하	무관
II 유 형	특정계층	15~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	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3년)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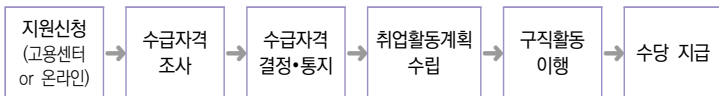
* 청년연령은 2024.2.9. 신청자부터 적용 (2024.2.9. 이전 신청시 청년연령은 18~34세임(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없음))

I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 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II 사업추진체계



55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사업목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

■ 주요내용

구분	훈련연계형	체험형
목적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직무경험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 다만, 훈련연계형 참여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지원기간·시간	1~3개월	20~30일
지원 금액	(참여자) 참여수당 일 최대 7.1만원 (참여기업) 프로그램운영수당 월 최대 50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일 최대 2.2만원 (참여기업) 멘토링수당 월 최대 10만원

— 2024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04

사업주 지원 장려금



56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I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법무부)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고용노동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8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9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1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및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고용노동부)
12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사업추진체계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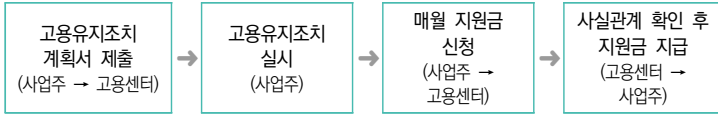
-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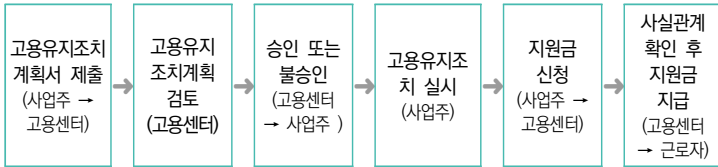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휴업(평균임금 50%미만 수당 지급 포함)을 실시한 근로자
- 지원내용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실제 수령한 금품 등 고려하여 지원
- 지원수준
 - (1일 상한액) 6.6만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 (지원기간) 휴업·휴직은 합하여 연간 180일
무급휴업·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사업추진체계

- 휴업·휴직



- 무급 휴업·휴직



*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평균임금의 50% 미만 또는 미지급 등), 무급휴직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와 이전 1년간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의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이력 등을 토대로 사전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필요

58

고용안정장려금(총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I 사업목적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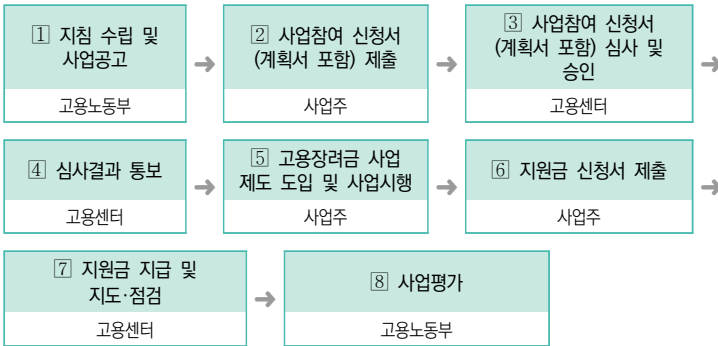
I 사업내용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 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 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 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우 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①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 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고용센터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 업 승인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 ▪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 (지원 한도)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①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② 유연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시차는 월 최대 20만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유연 근무 유형은 최대 250만원 3년차)

사업주 지원 장려금 ②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출산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금] 월 30만원 ※ 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장려금] 월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세번째(사례)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대체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대체인력인건비] 월 80만원 (단, 업무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 사업주가 대체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사업추진체계



* 위라벨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59

우리별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고용24(www.work24.go.kr)

I 사업목적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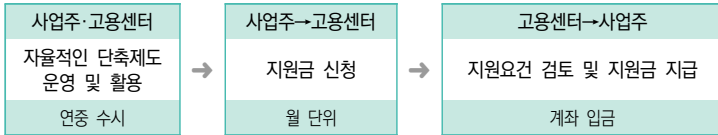
I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p>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p> </div> <p>※ (단축 전 근로자 요건)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말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추진체계



60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I 사업목적

-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에 기여

I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p>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사업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p> <p>② 고용센터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p> <p>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p> <p>④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p> <p>* (단축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 ▪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 (지원 한도)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신청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한)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주기) 최대 1년, 3개월 단위 ▪ [Tip] 근로자 각각의 실근로시간을 모두 2시간 이상 단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일감나누기(work-sharing) 등을 통해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I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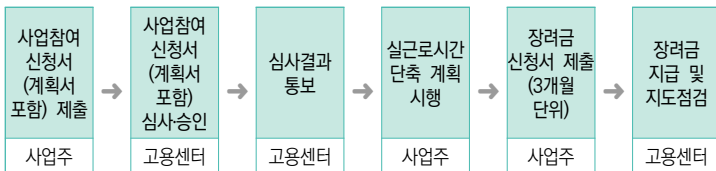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㉖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㉗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
 - 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㉕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㉖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㉗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㉘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업추진체계



6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고용24(www.work24.go.kr)

I 사업목적

-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I 사업내용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도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장려금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10만원 (월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상향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우수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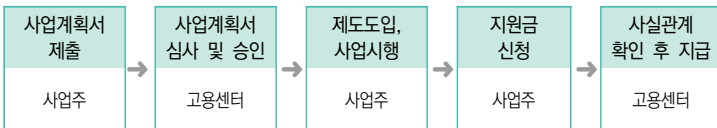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재택부문 50%

※ 유연근무(재택·원격·사차·선택 등):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 (3년치 지원)

사업추진체계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똑똑하게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 생활 지원 등)

6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감경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특례* 적용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①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대체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p>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 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p> <p>※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p> <p>※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p>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63

사회적기업 육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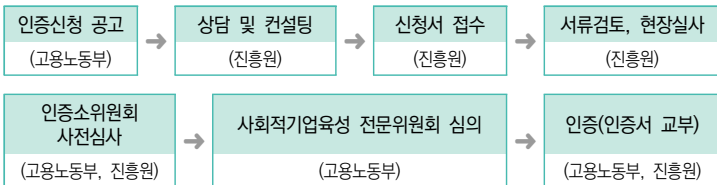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인증요건 및 절차
 - (요건) ▲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목적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 규정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 (종합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종합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각 부처 (지정 공모 및 심사·지정)
기초자치단체 (신청접수, 관리)	진흥원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광역자치단체 (심사 및 지정)	각 부처 (심사 및 지정)

-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인건비 지원 (‘24년 지원단가 1인당 월 2,060,740원 × 지원율) * 예비 50% / 인증 40% + 20%~30% 추가(취약계층)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판로개척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상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금융지원	사회적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모태펀드 등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고
세제지원	①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 근로자수×2천만원) ②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③내국법인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한정)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2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처리

6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 044-202-7976),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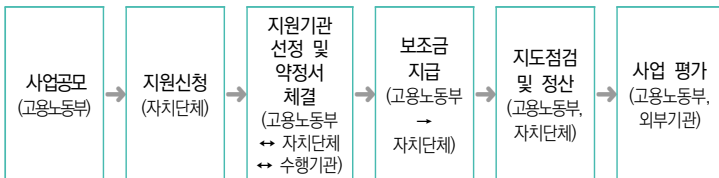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

■ 사업내용

- 지역혁신프로젝트
 -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등을 지원(광역자치단체)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 자치단체가 중앙 일자리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 또는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등 중앙 일자리사업과 연계·우대(PLUS)하여 고용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광역자치단체)
-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주력산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패키지 지원」운영 지원(광역자치단체)

■ 사업추진체계



65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I 사업목적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24.1월 현재 1개 지역(거제시, '23.1.1~'24.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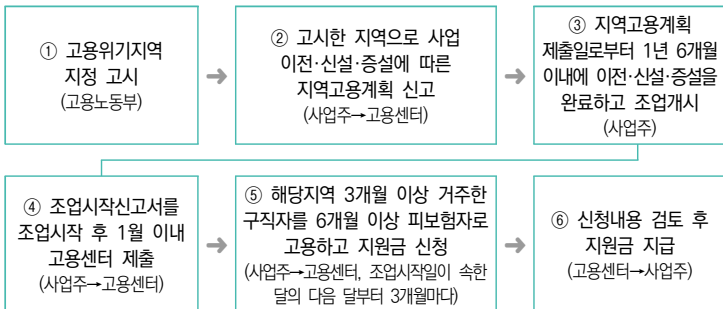
I 사업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정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1일 상한액은 6.6만원)

I 추진체계



66

지역일자리 공시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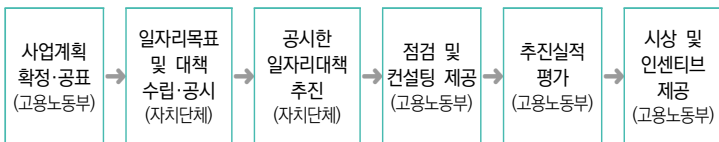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 제공

■ 사업내용

- (공시주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시내용)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 *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종합계획(4년)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 (공시방법) 자치단체는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
 - * 공시한 자료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도 게시하여 공유
- (평가 및 인센티브) 자치단체의 연차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
 - * 정부시상, 담당공무원 표창, 지역일자리사업 사업비 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67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사업목적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 고용위기지역('24.1월 기준): 거제시 ('23.1.1~'24.6.30)

I 지정기준

유형	요건
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 또는 제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3.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4.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4.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5.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절차

- 자치단체 신청 → 현지조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 지정기간

-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 지원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고용정책심의회 의결 필요)
-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 사업목적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24.1월 기준): 택시운송업 ('22.4.1~'24.6.30)

■ 지정기준:

-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요건① 충족기준 〉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위 4가지 기준 중 2개 이하로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절차

- 업종별 단체 등이 신청 → 현장실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지정기간

- 최초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69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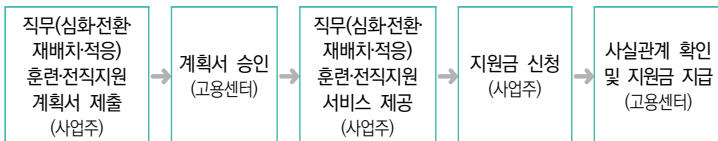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I 사업 내용('23년 기준)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 최근 3년 이내 사업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변동 업종 기업 등
- 지원 요건: ①〈공통〉 최소 1개월 이상 또는 최소 20시간 이상 훈련, ②〈사업주 훈련장려금〉 1일 4시간 이상 집체훈련 실시
 - * 대규모 기업은 훈련 실시에 대한 노사협의 필요,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지원
-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 * 단, 전직지원 의무 있는 1,000인 이상 기업은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비용만 지원
 - (지원금액)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합산 최대 300만원)
 - * 〈훈련비〉 참여 근로자 1인당 300만원 내에서 훈련비(실비) 지원
 - ** 〈사업주 훈련장려금〉 참여 근로자 1인당 1일 10만원(정액)을 100만원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I 사업추진체계



70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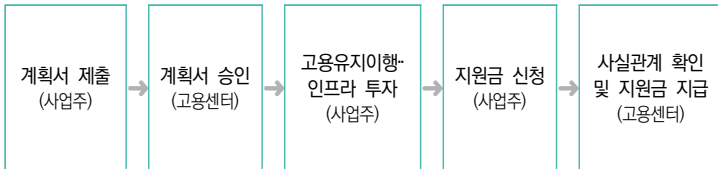
■ 사업 내용('23년 기준)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변동 업종 기업 등

- 지원 요건: ①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②최소임차금액 100만원 이상
- 지원 내용: 직무전환 훈련 시설 임차비 및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임차비 등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억원 한도로 사업주 투자의 50% 지원
 - *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시설은 80%까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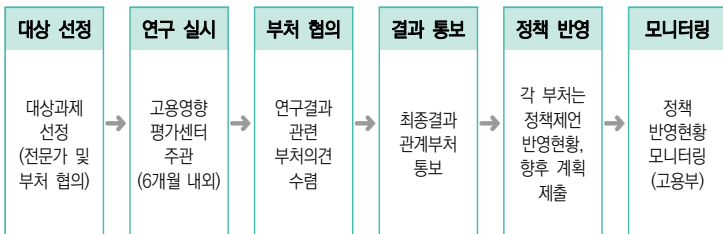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대상)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 (내용) 정책 등의 고용효과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 사업추진체계



72

고용형태공시제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30),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제 전용 홈페이지(<http://www.work.go.kr/gongsil>)

I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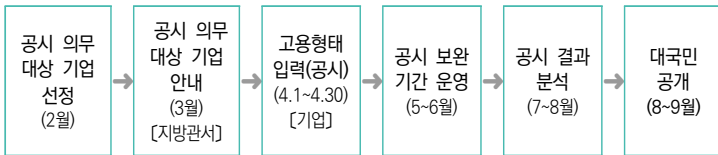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고용현황 공시

I 사업내용

-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시내용
 -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 〈1〉 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②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 ③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2〉 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등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 공시방법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워크넷에 공시
 - * 대상 기업들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gongsi>)에 로그인하여 입력(공시)
- 공시기간
 - 2023.4.1.~4.30.
 - * 워크넷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 대국민 공개

■ 사업추진체계



73

고용노동통계조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044-202-7244),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

목적

- 사업체의 고용노동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제공함으로써 기업·국민·정부 등 통계 수요자의 고용노동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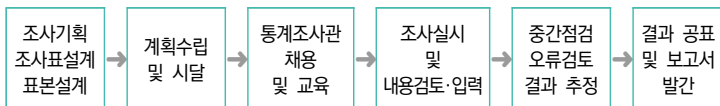
사업내용

고용노동통계조사 현황

조사명	조사 기준기간	조사대상	조사 주기	조사항목
사업체노동력 조사	• (고용) 매월 - 마지막영업일 • (근로실태) 매월 - 급여계산기간	• (고용) 종사자 1인 이상 50천개 사업체 • (근로실태) 상용 1인 이상 13천개 사업체	월 1회	• (고용) 사업체 종사자수, 입·이직 등 노동이동, 빈 일자리수 등 • (근로실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	4월 급여 계산기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연 1회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임금체계, 정년제, 임금피크제조사	6월말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연 1회	기본급 체계(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등), 정년제, 유연근무제, 임금피크제 등 도입 현황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 1일, 10월 1일	종사자 1인 이상 72천개 사업체	연 2회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구인·채용·미충원·부족·채용계획인원 등
지역별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 10월 (마지막영업일)	종사자 1인 이상 200천개 사업체	연 2회	시·군·구별 사업체 종사자수, 입·이직 등 노동이동, 빈 일자리수 등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6월 급여 계산기간	근로자 1인 이상(특고 포함) 33천개 사업체	연 1회	장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및 직종에 따른 근로실태(임금, 근로시간, 보험 등)
사업체기간제 근로자현황조사	6월, 12월	근로자 5인 이상 10천개 사업체	연 2회	기간제근로자 수 및 기간제법 적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회계연도	상용 10인 이상 3.6천개 기업체	연 1회	기업체의 직·간접 노동비용 • 직접: 임금(정액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 • 간접: 퇴직급여, 법정노동·법정의복지비용 등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12.31.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①일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②공무원 재직기관, ③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등을 제외하고 가공집계(사업체 및 종사자수)		

* 이상의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체 대상 조사(가구조사 및 산하기관 조사 제외)

■ 사업추진체계



74

인력수급전망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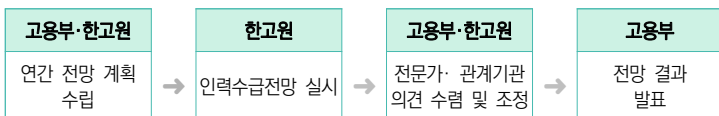
사업목적

- 향후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공급 및 수요를 전망하여 국가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사업내용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 전망 실시
 - * 10년 간의 산업(소분류), 직업(세분류)별 수요 전망 실시, 성·연령별 공급전망 실시
- 주요 산업·직업 테마전망
 - 사회·경제적 이슈 산업과 직업을 선정하여 인력수요 전망 실시
 - * '23년 산업·직업 테마 전망 주제: ① 농촌지역 고용 특성과 농업 인력수요 전망, ②디지털 기술혁신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인력수요 구조 변화
- 디지털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
 - 기술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등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 실시
- 주요 업종별 단기 일자리 전망
 - 주요 10개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변화 전망 실시
 - *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 10개 권역 및 17개 시도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사업추진체계



— 2024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05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75

고용보험제도

I 목 적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II 적용범위

-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람 등
-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한 경우,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보수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 적용직종: ('21.7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7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플랫폼품 운송차주, 유통배송기사),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골프장캐디
 -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 한 경우,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사업체제

● 근로자

구분	내 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1.8	사업주 0.90 근로자 0.90
	유형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150인 미만: 0.25	사업주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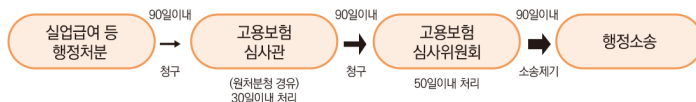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분	내 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1.6	사업주 0.80 종사자 0.80
	유형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 고용보험 심사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근로복지공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심사처리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재심사는 30일 이내 처리

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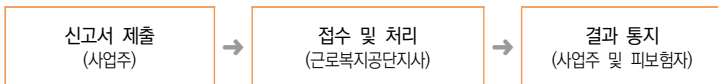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I 사업내용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예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예 '상실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예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거짓 신고시 과태료 부과
 - 미신고는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거짓신고는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I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77

구직급여·연장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사업 목적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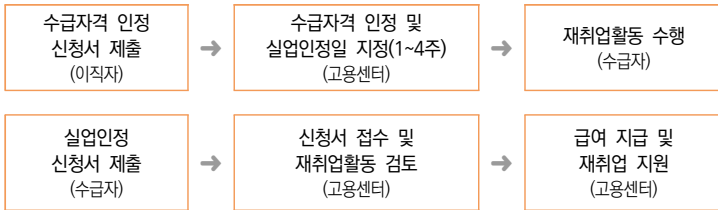
- (지원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
 -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 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 ▶ 개별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 훈련연장: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 ▶ 특별연장: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78

취업촉진수당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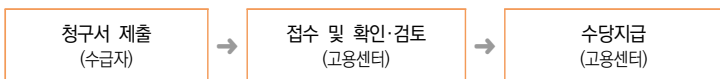
사업 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내용

구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조기재취업수당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5톤까지는 실비 + 7.5톤까지는 실비의 50% 지급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7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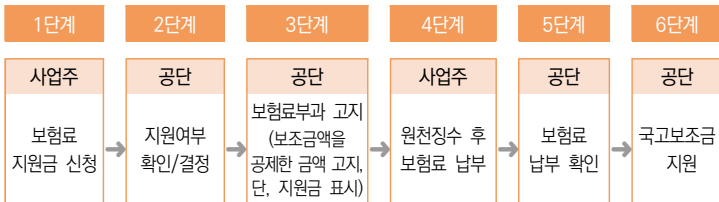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I 사업내용

- (지원기준) 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 ②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①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②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 당사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 단,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 다만,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릭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I 보험료 지원 절차



8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사업내용

-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
- 지원요건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 * (경영악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추세 등
 (정당한 사유)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지급수준: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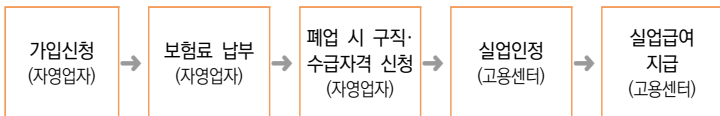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비)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6만원 한도 지원

(총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단위기간 1개월 소정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81

실업크레딧 지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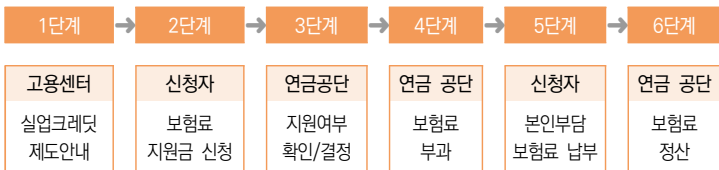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8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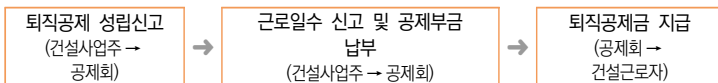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II 사업내용

- 가입대상
 -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 (퇴직공제 성립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 신고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화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 처리” 메뉴 →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 ↳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https://ecard.cwma.or.kr>)을 이용하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 * 공제부금 일액: 6,500원('20.5월-)
- (퇴직공제금 지급)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 *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 적립일수 252일 미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III 사업 추진 체계(지원절차)



83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가사랑'(www.gasarang.go.kr)

■ 사업목적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양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2.6.16)
-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지원 및 제도안착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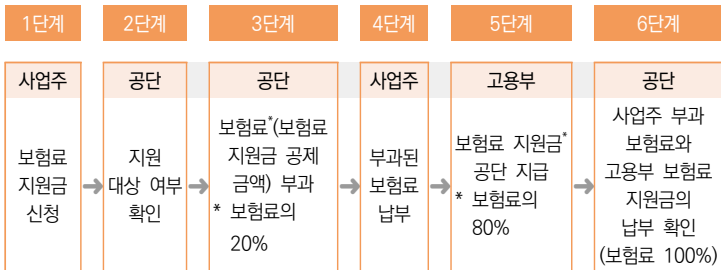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 ※ (인증요건) ▲법인 ▲가사근로자 5명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 수단 등
 - 인증받은 기관은 ①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②요금 및 요금산정기준, ③이용 절차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일반이용자에게 공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노동관계 법령 적용)

근로계약 체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임금, 최소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 체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직·질병 등의 상황에 대비
기본 근로조건 보장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되, 가사서비스의 근로장소·형태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규정 * (최소 근로시간) 주 15시간 근로 보장 (휴게시간) 당사자 간 협의, 이용계약에 포함 (유급휴일·휴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에 비례 적용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목적)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인 가사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과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
 -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모두 충족
 - ※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지원내용·수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지원
 - (지원기간) 3년*
 - ※ 3년 한시 사업('22~'24년)으로, '24년까지 지원신청한 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방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06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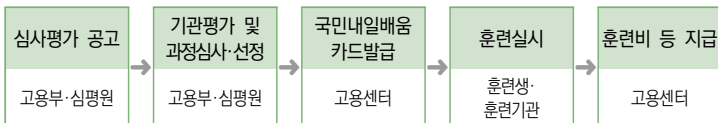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사업내용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 세부훈련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 사업추진체제



8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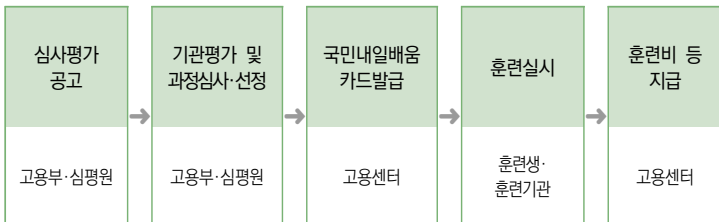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1회에 한함)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사업추진체계



86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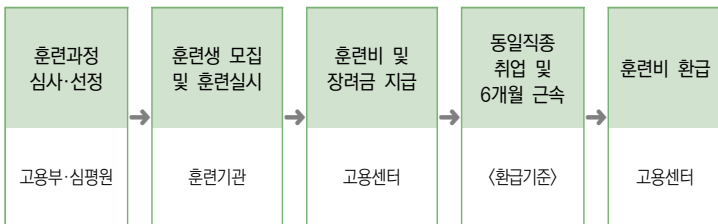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인력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아이돌봄미)의 양성훈련 실시

I 사업내용

- (훈련과정) 의료기술지원(요양보호사), 아이돌봄(아이돌봄미)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지원내용)
 - 훈련비의 90%*를 선 부담하고 훈련 수료 후 동일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선 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10%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지급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I 사업추진체계



87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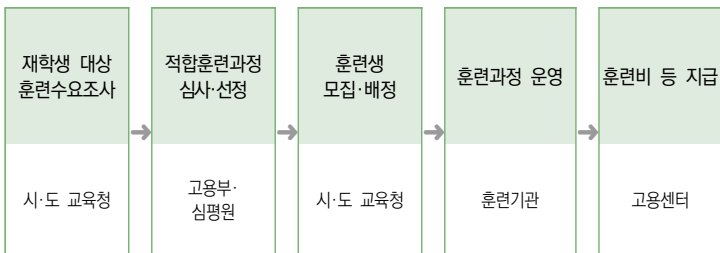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

■ 사업내용

- (지원과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선정된 훈련과정
 - * 세부 훈련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고3학생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 사업추진체계



* 단, 일반고 특화훈련은 사업공고 이전에 교육청을 통해 학생 수요조사 실시 → 훈련과정 선정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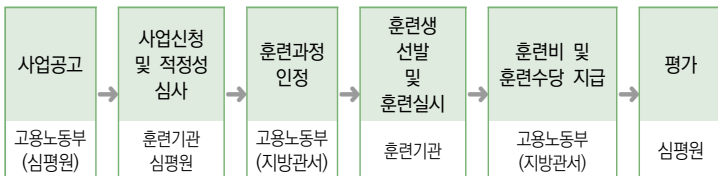
■ 사업목적

-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 사업내용

- (사업개요) K-디지털 트레이닝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KT·삼성 등 선도기업, 서울대·한양대와 같은 우수 대학 등이 참여하여,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 '24년부터 디지털 뿐만 아니라 첨단 및 융복합 분야를 포괄하는 신기술 분야 전반으로 훈련분야 대폭 확대
- (훈련특징)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며,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
 - 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의 집중적인 훈련과정으로, 경험·문제 해결 능력에 중점을 둔 훈련과정 운영 추구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지원, 월 최대 31.6만원 훈련수당 추가 지원

■ 사업추진체계



89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Digital Divide)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체계 마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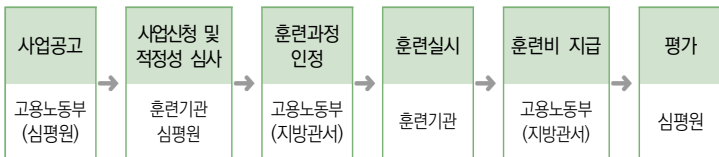
- (훈련내용)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 혁신 기관 중심으로 공급

* 실시간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원격 훈련이지만 집체 훈련에 준하는 과정 제공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50만원(지급 후 1년 한도)의 크레딧 추가 지급

* 자비부담금(훈련비의 10%)은 과정 수료 후 100% 환급(단, 6개월 이내에 만족도 조사(수강평) 작성 및 환급 신청 필요)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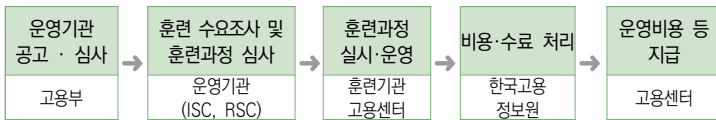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현장 기반 훈련을 수시 공급하여 재직자의 고용유지 또는 이·전직, 실업자의 취·창업 등을 지원

■ 사업내용

- (개요)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RSC) 등을 중심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 기반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훈련비 등 우대 지원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훈련과정) 산업별·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직 및 이·전직 과정
- (훈련비) 최초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지원
 - 재직자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목적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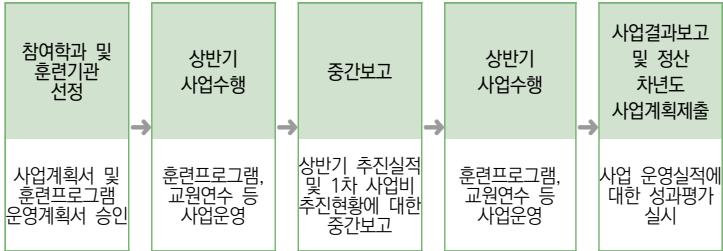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승인을 받은 학과 또는 신기술 훈련 지원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과
- (지원내용) 신기술·신산업분야로 교과과정을 개편한 직업계고 학과 신입생을 재학 3년간 정규교육과정과 연계,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민간기관 훈련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1~3학년)으로 지원

* 학과당 8천만원 내외, 연차별 신규 학년이 추가되는 경우, 연계 훈련기관의 훈련비와 운영비 추가 지원(1개 학년 당 훈련비 5천만원, 운영비 400만원 추가 지원)

-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민간 훈련프로그램(연 100시간 이상) 지원
- 디지털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디지털 훈련과정 의무 이수
- 교사의 신기술분야 전문성 및 교수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 등
- (훈련방식) 1~3년차 단계적 지원
 - (1년차) 신기술 기초지식 및 실습 위주 훈련(디지털기초훈련 의무 편성)
 - (2년차) 신기술 전문지식 훈련 및 관심 제고(특강, 멘토링, 경진대회 등)
 - (3년차) 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산업계 수요 반영)

■ 사업 추진 절차



* 전담 운영지원 기관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및 학과 컨설팅 수시 진행

9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I 사업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여 대-중소기업 상생기반의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I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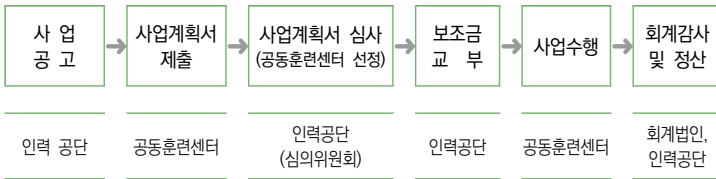
- (사업내용)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 시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에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인프라 및 운영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20억)	지원조건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증·개축 비용, 장비 구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일반운영비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전라분야 훈련과정운영비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 에 지원

- (유형) 컨소시엄 유형은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등으로 구분

유형	주요내용
산업맞춤형	• 대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가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기업(기업·사업주단체 등)의 훈련시설을 공동훈련센터 선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하이테크형	• 디지털,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전통사업 등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공공기관 등)를 지원

■ 사업추진체계



93

K-하이테크 플랫폼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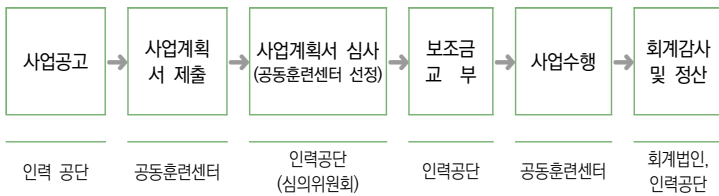
-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재직자·구직 청년, 고교생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직무훈련 제공 및 시설 공유·개방

사업내용

-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단체,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인프라 비용은 1년차 8억, 2년차~5년차 연간 1년에 최대 5억씩, 5년간 총 28억 지원

구 분	예산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인프라 운영 비용	K-Digital Platform		플랫폼 운영·인프라 구축비 - 시설 임차 및 공간 조성비, 장비 구축비 - 운영비(일반운영비, 인건비) - 디지털확산지원비	1년차 8억, 2-5년차 5억
훈련 비용	택1 이상 필수	K-Digital Training (구직자 과정)	훈련 과정 운영비 - 훈련비단가 130% 또는 스마트훈련 단가 * 디지털 선도기업 카데미는 별도 단가	시간당 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원
		K-Digital Credit (구직자 과정)	훈련 과정 운영비(1인당 정부지원금) - 훈련기관이 설정한 시장가격 인정, 50만원 한도 내	
	선택 사항	내일배움카드, 사업주 훈련 등	각 사업별 훈련과정 운영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사업추진체계



사업목적

- 산업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직무 전환 훈련을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 확충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저탄소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기업, 대학, 지자체 출연기관 등
- (훈련내용) 산업전환 진행단계 진단 및 기업수요맞춤형 훈련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별 중장기 훈련로드맵을 수립, 직무훈련 및 지원프로그램 제공
- (지원내용) 5년간 최대 28억 지원(1년차 8억, 2~5년차 연간 최대 5억원)
 - * 훈련비용은 훈련인원 등 각 훈련사업 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지원항목		연간 지원 한도액	비고
인프라 운영비용	운영비	전담자 인건비	지원금 총액 내에서 지원항목별 자유롭게 편성가능
		일반운영비	
	훈련시설 및 장비	1년차: 8억 2~5년차: 5억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		
훈련 비용 (책1)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100%)	협약기업에 배정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계정 한도액 내	사후지급 (임금의 일부, 식비/숙박비, 훈련수당 등 별도)
	실비단가 방식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300%이내)		

사업추진체계



9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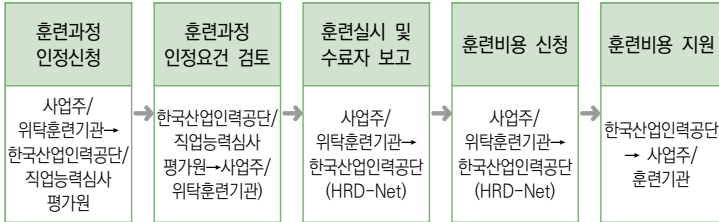
-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시간 이상 훈련(집체, 인터넷형) - 우편원격훈련은 2개월 3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 휴가 훈련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20일 이상 훈련 - 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80시간 이상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만원 한도)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훈련과정 접수: ① 자체훈련-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위탁훈련 및 원격훈련-직업능력심사평가원

96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사업목적

- 오랜 경험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로 위촉, 중소기업 대상 숙련기술전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 사업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	숙련기술전수 (애로기술 해결 등)

■ 사업추진체계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

■ 사업개요

- '13년부터 고용노동부 총괄, 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 24대 분야1,093개 NCS 개발·고시('23.11.29.)

* 매년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10여개 NCS 신규 개발

NCS 24대 분야(대분류)

0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	03. 금융·보험	04. 교육·자연·사회과학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6. 보건·의료	07. 사회복지·종교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9. 운전·운송	10. 영업판매	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16. 재료
17. 화학바이오	18. 섬유·의복	19. 전기·전자	20. 정보통신
21. 식품가공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3. 환경·에너지·안전	24. 농림어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예시

- 각 NCS에서는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NCS의 내용(예시)〉

직무 (NCS)	능력 (능력단위)	세부능력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 일부 내용만 발췌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하드웨어 부품 선정	부품의 특성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동작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부품의 검사항목 결정하기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부품에 대한 기본 지식 • 부품사양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측장비 사용 능력 • 부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의 소재 및 재질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 • 정확한 부품 평가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부품 선정하기 ∴	하드웨어 회로 구현설계 ∴	

⇒ (인력공급)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하고, (인력수요)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에 준거로 활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추진현황

- NCS 현상성 제고
 -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적시에 NCS 개발·개선,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 ('23년) 클라우드보안관리운영, 전자자동차검사 등 미래유망분야 포함 10개 개발, 인공지능 플랫폼구축, 산업보안관리 등 산업현장 수요 반영하여 110개 개선

● 현장형 인재육성

- 교육,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여 현장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

* 교육: ('18) 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학년부터 전면 개편
 훈련: ('15) 초 공공훈련 + ('16) 초 민간훈련(3.62만여개) 과정 개편
 자격: 자격의 현장성 및 NCS와의 연계성 확대를 위해 NCS와 자격 간 대상범위가 불일치 하는 경우, NCS를 기반으로 자격의 분할·통합 등 개편 추진

NCS 기반 자격 개편 사례

개선	패션디자인산업기사는 패션트렌드 분석 및 샘플패턴 제작, 시제품 개발 등으로 시험과목을 변경하여 실무에서 활용되는 내용으로 평가내용 개선
분할	화공기사 자격을 산업현장직무를 반영하여 화공기사는 석유화학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정밀화학기사를 신설하여 두 종목으로 분할
통합	기계설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는 NCS 능력단위로 보면 자격 내용이 유사하고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자격활용도가 낮아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

- 자격-교육-훈련-경력 간의 상호 호환이 가능한 역량체계(SQF)* 설계, 활용 우수사례 발굴

* 산업별 직무역량체계: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 특수용접기능사, 컨벤션기획사 등 186개 자격종목에 대해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 운영

98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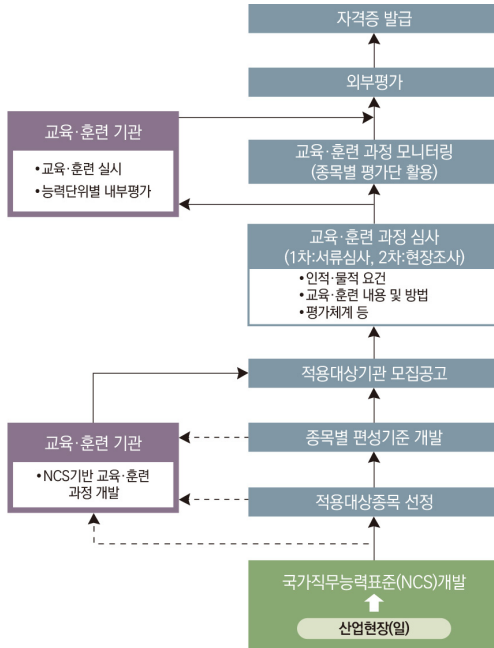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CQ-Net 홈페이지(https://c.q-net.or.kr)

■ 개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 추진절차



■ 사업추진체계

주요절차	세 부 내 용	비고
① 대상종목 선정	• 매년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 선정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		
②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	• 선정된 자격종목별 NCS 능력단위 기반 교육·훈련 과정 내용(필수/선택 능력단위 및 최소 교육시간), 평가방법, 시험문제 원형 개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③ 과정평가형자격지원 단 구성·운영	• 적용대상 종목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인력확보 (NCS 개발 전문가, 시험위원, ISC 추천 전문가 등)	인력공단
↓		
④ 시행계획 수립	•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 교육·훈련과정 수, 평가의 난이도, 평가일정 등 공고	고용노동부
↓		
⑤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편성	•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편성	교육·훈련기관
↓		
⑥ 교육·훈련기관(과정)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⑦ 외부평가 문제출제	• NCS 능력단위 중심의 산업계 주도 외부평가 시험 문제 출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⑧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 - (이수기준) 75%이상 출석, 내부평가 60점이상	교육·훈련기관
↓		
⑨ 교육·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	• NCS 기반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분기 1회 이상) - 지정받은 내용으로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 -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⑩ 외부평가	•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 실시 - 지원단에서 문제출제, 필수능력단위 중심의 평가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⑪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교육·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 자격증에 교육·훈련을 받은 NCS 능력단위 등 명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99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644-5113)

관련 홈페이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www.ksqa.or.kr),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목적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을 위해 기관 건전성, 훈련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평가하여 정부지원훈련에 대한 참여자격 부여
 - **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적합한 훈련과정 선정

■ 심사평가 신청대상 구분

- 기관평가: 집체훈련기관*, 원격훈련기관**
 - * 집체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일반고 특화 훈련, 과정평가형 자격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 원격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과정심사: 집체훈련과정*
 -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 원격훈련은 별도 심사계획 공고

■ 심사평가 요소

- 기관평가: 기관건전성(준법성(행정처분), 재정건전성) 및 훈련역량*
 - * 훈련성과(취업률, 이수자 만족도, 이수자평가 등), 현장평가(인프라, 과정 개발 등)
- 과정심사: 기본요건, 과정적정성(훈련내용, 교·강사, 시설·장비 등), 성과적정성* 및 산업·지역별 인력수요 적정성**
 - * 실업자 일반계좌제훈련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심사평가 결과 및 활용

- 기관평가: 훈련기관마다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부여 및 고용24 (www.work24.go.kr) 공개
 - * 신규기관은 1년인증, 우수훈련기관은 3년인증 외 2년 추가 부여
- 과정심사: 훈련과정 선정 제외(인증유예 등급 훈련기관 포함)

■ 추진일정

-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23.12월) → 훈련기관 설명회('24.3월) → 신청·접수(4~5월) → 기관평가, 과정심사(~9월) → 결과 통보(10월) → 이의신청 심의·확정(11월말)

10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oomwel.or.kr)

■ 사업목적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 원격훈련의 경우 쌍방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함
- (소득요건) 가구원합산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KDT)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월 최대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사업추진체계



101

숙련기술 장려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I 사업목적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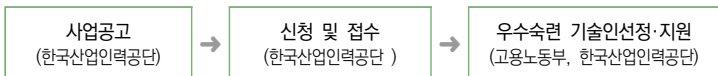
II 사업내용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숙련기술인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및 홍보

구 분	인원 (년)	선정대상	지원내용
대한민국 명장	3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려금 20백만원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증서 및 명장패 등 수여 •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1명 이상 선정된 중소기업)
우수 숙련기술자	10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생산업무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려금 2백만원 • 증서 수여 •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2명 이상 선정된 중소기업)
숙련기술 전수자	1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기술전수지원금 지급 • 증서 수여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 업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판 수여 •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이달의 가능한국인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등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CEO로서 숙련기술 향상에 기여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서, 휘장, 흉상패, 현판 등 수여

- 그 밖에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민간숙련기술인단체 및 숙련기술인 취업 등 지원

■ 사업추진체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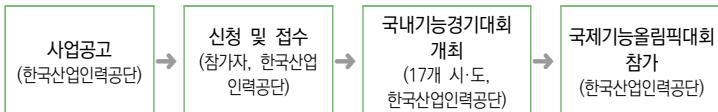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기능경기대회 저변 확대를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등을 통해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및 숙련기술 향상 도모

■ 사업추진체계



-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출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여 출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6), 직무능력은행 홈페이지(<https://bank.ncs.go.kr>)

■ 사업목적

- 교육·훈련·자격·경력 등을 통해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하여 취업·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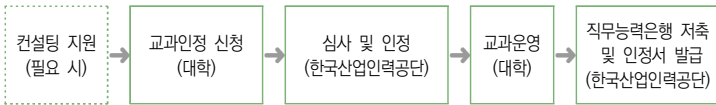
직무능력은행 구축 ('23. 하반기 서비스 예정)

- 직업훈련(HRD-Net)·자격 정보시스템(Q-Net, CQ-Net), 폴리텍 통합학사 시스템 등을 연계한 직무능력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 '23.9.1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서비스) 개인이 취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계좌 발급, 저축된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해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
 - * (개인)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시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
 - * (기업) 구직자·근로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여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 * (고용서비스) 잡게어와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및 훈련추천 등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
- 고용보험DB,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NEIS 및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중('23.10월~)

구 분	정보시스템	제공 기관	연계 정보	연계 시기
고용부	고용보험DB	근로복지공단	상용·일용 근로자 경력정보	'24.2월
교육부	온국민평생배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24.2월
	NE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고교생 NCS 기반 교과 이수정보	'24.4월
국세청	국세정보시스템 (홈텍스)	국세청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24.2월
국방부	국방인사정보체계	각 군	23년 국방자격(12개) 및 군 경력정보 (시범사업 군 간부)	'24.2월

NCS기반 교과인정 및 컨설팅

- (교과인정) NCS 형식으로 설계되지 않은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심사하여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가능한 과정으로 인정
- (컨설팅) NCS기반 교과인정과 직무능력은행제 참여 지원을 위해 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추진체계



■ 사업목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주요 응시목적*은 취업, 자기개발,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이며,
 - * (청년응시자 응시목적) 취업 49.9%, 자기개발 21.5%, 업무수행능력 향상 8.7%, 이직(전직) 3.9%, 창업 3.3%, 학위취득 3.1%, 자격수당 3.0%, 승진 2.1% ('22년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설문조사 통계)
 -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은 미취득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자격취득은 취업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향상, 승진, 임금 인상 및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직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
 - * (취업률) 자격취득자 59.1%, 미취득자 46.1%('21년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결과 참조)

■ 사업내용

-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소득 및 취업 여부 무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24년 기준 493종목)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24년 242억)
 - 1인당 총 3회 지원으로 제한하고, 지원금 소진 시까지 한정

■ 지원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https://www.q-net.or.kr>)에서 원서 접수 시 할인된 응시료로 결제

07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Ⅰ 도입배경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이에 따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
- 이후 '21년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 면제자로'로 규율

Ⅰ 주요내용

-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외·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유급 인정
-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 근로시간면제 한도

● 조합원 규모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지역분포별

대 상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 간
전체 조합원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1,000명 이상인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사업 또는 사업장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Ⅰ 복수노조 설립 허용

- '11.7.1.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함
 -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 가능
-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내 교섭단위 분리·통합* 가능
 - *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21.7.6. 개정 노조법 시행)

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 ①자율적 단일화 → ②과반수 노동조합 → ③공동교섭대표단(노사자율 → 안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만 참여

Ⅰ 공정대표의무제도

-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Ⅰ 개요

-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

Ⅱ 조정

-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 지도록 설득하고,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개시 →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시 조정 성립 및 노동쟁의 종결, 조정 불성립 시 정당한 파업 가능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각 10일, 15일 이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교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연장불가

Ⅲ 중재

- 조정과 달리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①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또는 ②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개시
 -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할 수 없음
- 교원 노동관계는 ①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②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③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시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 당해 사건은 중재에 회부*
*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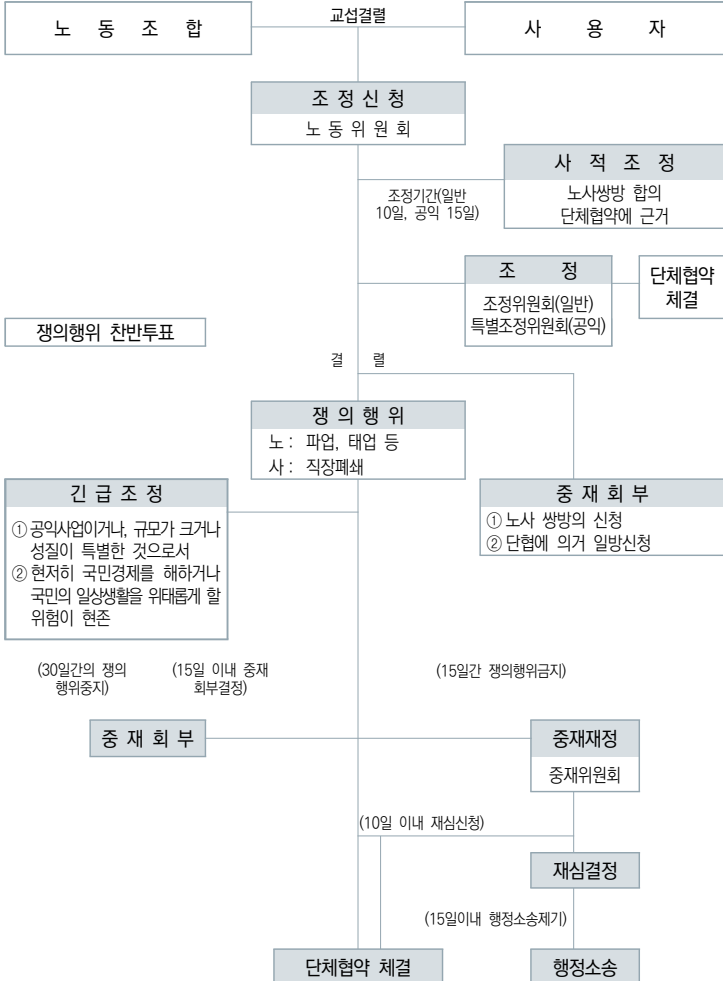
■ 긴급조정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 통상의 조정제도만으로 그 해결이 부적절한 경우 행하여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1조 제1항)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함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 긴급조정 결정 공표·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통고(고용노동부장관)
→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재개 불가) →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 수락 및 중재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사적 조정·중재

- 노사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적 조정 시에도 공적 조정의 조정전지기간, 중재 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적 조정과 같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 노사 당사자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가능

노동쟁의 조정 절차



목 적

-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근 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설치대상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구 성

- 동수의 근로자·사용자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내)
〈근로자위원 구성〉
 -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
 -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운 영

-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임 무

- 협의 사항: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7개 사항
- 의결 사항: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항
- 보고 사항: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

부당노동행위란?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하 '법」) 제81조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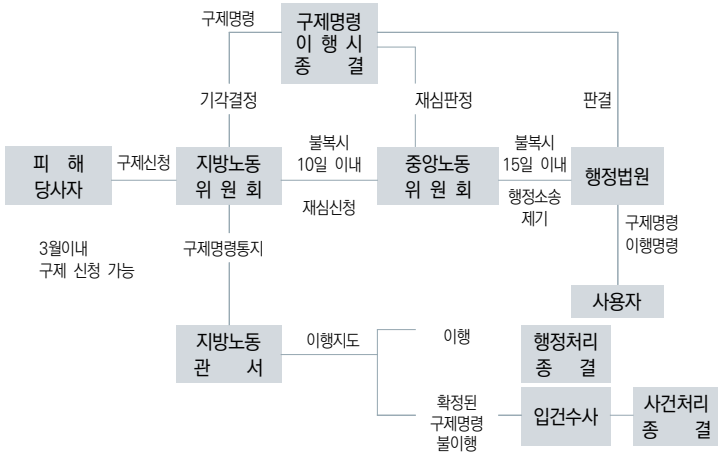
부당노동행위 사례(예시)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거나 반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입·방해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 *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
-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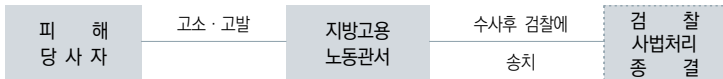
구제절차

-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82조제1항)
 - 다만,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82조제2항)

〈구제신청절차〉



-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90조)
 - 부당노동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음



109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 개요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 구제신청 방법

-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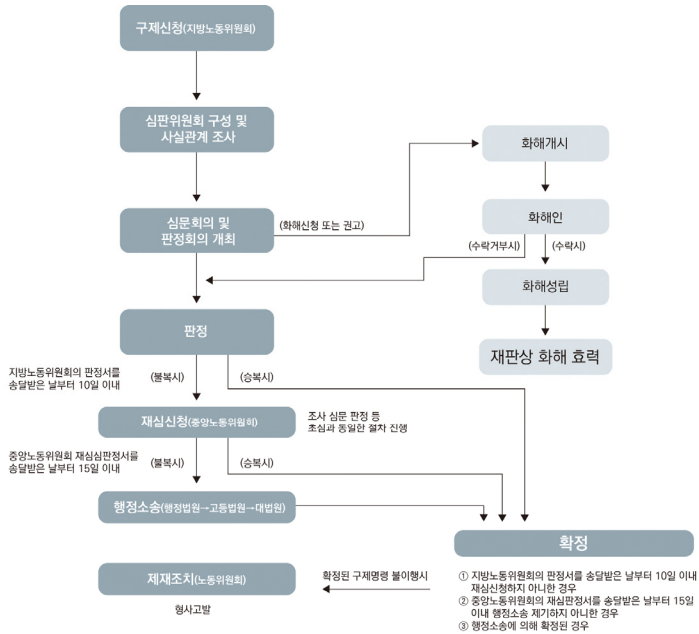
-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연장 가능)하고,
 - 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송부
 - 다만, 당사자 간 '화해'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 종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근로자만 신청 가능)
 - *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

- 지원 내용: 이우서·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구제신청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

참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흐름도



110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04, 760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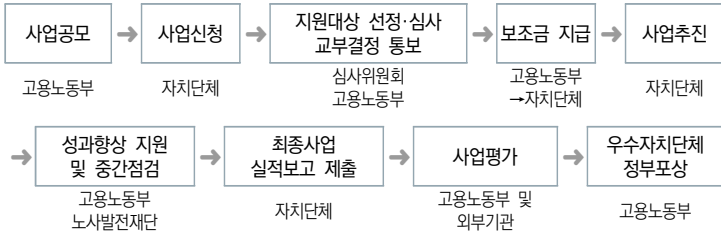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도모

II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거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고용·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 (지원내용)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가 국정과제 의제, 광역-기초 공동의제, 지역특성 반영 의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원*
 - * (예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지원, 산업재해 예방, 광역-기초 연계사업, 지역 특성 반영 사업 등
 - **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80백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0백만원 한도 지원(재정자주도 고려 광역은 45~55%, 기초 최대 15~25% 지방비 매칭 조건 지원)
- 지역노사민정 관련 담당자(자치단체, 지방관서 등)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 노사민정활성화 컨설팅(자치단체 대상) 실시

III 사업추진체계



111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고용노동부 ☎ 044-202-7598, 노사발전재단 ☎ 02-6021-106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I 사업목적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II 신청방법

구분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대상(大賞)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 중	2024년 하반기 중
접 수 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선정공고	6월말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11월중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단, 사업장 단위 신청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 	▶ 2022 ~ 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노사문화 대상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한글파일 제출), 증빙자료(한글파일 또는 PDF 제출) ▶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 반드시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을 구분해 신청

■ 선정절차



■ 선정기업 지원내용

- 유효기간: 우수기업·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노사문화 대 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담당기관
〈 행정상 우대 〉			
■ 정부포상	대통령·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인증서·인증패	고용노동부
■ 정기근로감독	면 제 (최장 5년)	면 제 (최장 5년)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가점	2.5점 가점	2.5점 가점	
■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시	우수기업 표시	우수기업 표시	
■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	제작·송부	제작·송부	
■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5점 가점	국 방 부
■ 계약 적격심사시 우대	0.1점 가점	0.1점 가점	방위사업청
■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에 한함)	1년(2년: 국무총리상 이상)		국 세 청 (납세자보호 담당관)
■ 납세담보 제공 면제 (모범납세자에 한함)	2년(3년: 국무총리상 이상)		
■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2점 가점	2점 가점	중소기업 벤처부 (인력정책과)
■ 현역인원배정시 우대	2점 가점	2점 가점	
■ 클린사업 인증시 우대	최우선 선정	2점 가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5점 가점		
〈 금융상 우대 〉			
■ 대출금리	0.1% 우 대	0.1% 우 대	농협
■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우 대	우 대	신한, 하나, 국민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 대	우 대	신용보증기금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112

상생연대 형성지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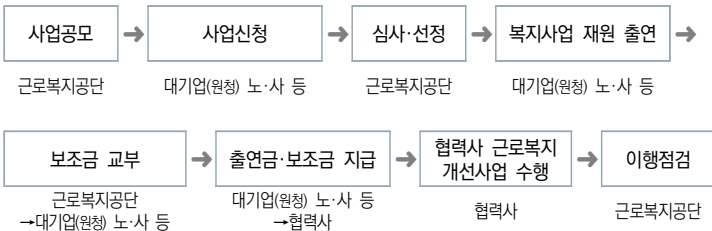
사업목적

-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대기업 노·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협력사 간 노·사 및 노·노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상생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 대기업(원청) 또는 대기업(원청)의 근로자들이 2·3차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 출연 시 출연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 사업주 출연분의 100%, 근로자 출연분의 200% 지원
-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사업 예시
 - ① 복지시설 구입·설치·리모델링·운영 지원
 - ②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 장학금, 입학금 지원
 - ③ 근로자의 체육 및 문화 활동 지원
 - ④ 근로자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자녀 보육료 등 지원
 - ⑤ 근로자에게 기념품, 선물, 위로금 등 지급

사업추진체계



한 권으로 보는 고용노동정책

■ 사업 개요

- 노조 미가입 근로자, 소규모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책 의견수렴 및 노동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능의 커뮤니티 지원

■ 사업 내용

- (근로자 연대 공간) 고용센터 등에 근로자 전용공간 마련(전국 6개소), 다양한 편의시설(PC·프린터·다과 등) 제공 및 소모임 장소 대여
 - 전용공간 내 전문가(공인노무사) 노동법률 상담 상시 제공
 - * 서울(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 부산(사하고용센터), 대구(대구서부고용센터), 평택(평택고용센터), 광주(광주고용센터), 대전(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
- (노동 옴브즈만) 근로자 밀집지역인 산단·공단 등 방문, '찾아가는 노동상담' 서비스 제공 및 현장 정책제안·건의사항 등 청취
 - 사업주 방문서비스: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개정 법규 설명, 사업주 지원 장려금 안내 등
 - * 고용센터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컨설팅 등 사업주 지원서비스와 연계
 - 근로자 방문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노동관계 법률 상담 및 노동정책 제안·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추후 제안내용 정책반영 결과 등 회신)
 - * 고용센터 이동상담,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내일찾기 서비스' 등 방문서비스 등과 동행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등 연계) 근로자 의견청취·상담 내용에 맞는 고용·노동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권리구제 민원 안내·접수 지원
 - 고용복지*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직업훈련·전직), 지방고용노동지청(노동 권익보호), 안전보건공단(건강검진) 등 즉시 연계

114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04, 763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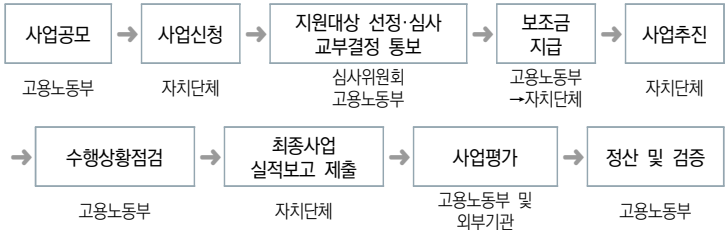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지자체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자체가 he지자체 또는 민간과의 컨소시엄 형태 참여 허용
*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은 대표 지자체에 지급
- (지원내용) 예비근로자(학생),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건설근로자(지자체 발주공사) 등 취약근로자에게 고용·노동·산안 분야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 사업추진체계



— 2024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08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115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02-6021-1167, 1187),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

I 사업 개요

-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등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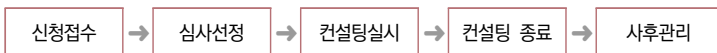
❖ '일터혁신' 이란?

-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①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와 ②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을 의미

I 사업내용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터혁신 의지가 있는 사업장
- (지원내용) 사업장 희망 분야* 컨설팅 무료지원(10주~21주)
 - ※ (컨설팅 분야) ①노사파트너십 ②작업조직·환경개선 ③고용문화개선
④임금체계개선 ⑤평가체계개선 ⑥장시간근로개선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장년고용안정
 - ※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 일부(30%)를 부담
- (신청·선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신청사이트(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www.kwpi.or.kr)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장 선정('24년 2월~8월 중 상시접수·수시선정)
 - * '사업장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에 대해 종합심사

I 컨설팅 진행 절차



Ⅰ 컨설팅 유형

- **(기본)** 진단 - 제도설계 - 이행관리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컨설팅
- **(이행 지원)** 컨설팅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작간접적으로 지원
 - * 설계된 제도 피드백, 세부 프로그램 구체화, 교육활동 연계 등
- **(진단)** 통합진단 통해 사업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과제 도출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지원
- **(지역·업종 특화)** 지역·업종별 일터혁신 특화모델 마련을 위한 컨소시엄형 컨설팅 지원
 - * 예) 지역별 거버넌스(지역 일자리 네트워크,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업종별 거버넌스(산업별 협단체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단 등) 등과 연계

Ⅰ 컨설팅 수행 내용

- (진단)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사업장 개선사항 확인
- (디자인팀 구성) 노사가 참여하는 디자인팀을 구성, 해결방안 마련
- (사업장 방문) 전문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정부 타 지원사업 연계 지원, 종료 후 3개월간 이행 관리 등

116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사업목적

-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360만원의 장려금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10만원 (월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상향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우수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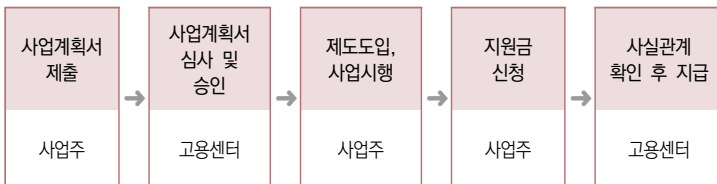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재택부문 5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 (3년치 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독독하게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독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용 문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쉴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 생활 지원 등)

*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참여혜택)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고용장려금 사업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참여방법)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할인혜택, 참여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가능

117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노사발전재단(02-6021-1000)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AA-ne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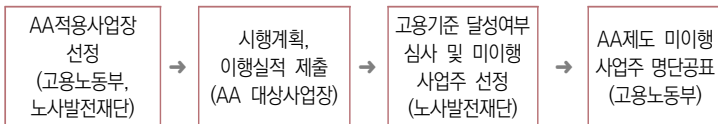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민간기업·공공기관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남녀 고용평등 촉진('06년부터 시행)

I 사업내용

- (대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500인 이상 사업장*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 (내용) 대상사업장의 직종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규모별(1,000인 이상, 미만), 산업별 30개 부문의 평균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과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 산정
 - 각 부문 평균치의 70% 미만 사업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 사업주에 대하여는 매년도 명단 공표

I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개요

-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I 주요 내용

〈고용상 성차별〉

● 차별 개념* 명시(제2조제1호)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상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차별 금지 명시(제7조~제11조)

- (모집과 채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금지 및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금지 의무(제7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제8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 차별 금지 의무(제9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 금지 의무(제10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년·퇴직 및 해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 금지 및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 의무(제11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12조)
 -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제13조제1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제13조제2항)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제13조제3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14조제1항)
-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할 의무(제14조제2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제14조제4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제14조제4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제14조제5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는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제14조제6항)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금지(제14조제7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참고자료

- 고용상 성차별 근절을 위한 설명자료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20.8월)
- 사업장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4.1월)

I 개요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II 주요 내용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1항)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3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4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제76조의3제7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 참고자료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조사·조치 및 사업장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3.4월) 참고

120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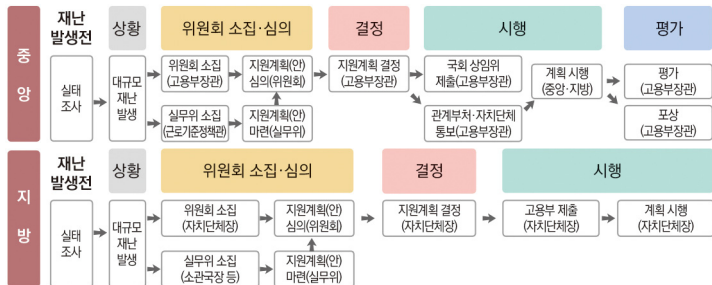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
 -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

사업내용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 (구성) 고용노동부장관(위원장),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협의회·노사단체 추천인사 및 관련 전문가 등
 - (심의사항)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실태조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 파악
-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121

근로자 파견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정의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I 파견 대상 업무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2개)
 -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I 직접고용의무

-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아울러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행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32개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 업무 제외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업무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카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하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 기사 업무 제외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 제외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 제외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제외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참고 근로유형**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제법 시행(07.7.1.) 이후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 】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 ☞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도급인 소속 근로자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근로자
 -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핵심은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임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 '하도급거래'의 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사용 종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택배기사, 골프장캐디,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12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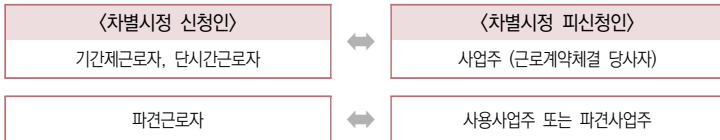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개요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됨
 -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요구를 통해 차별적 처우 시정

II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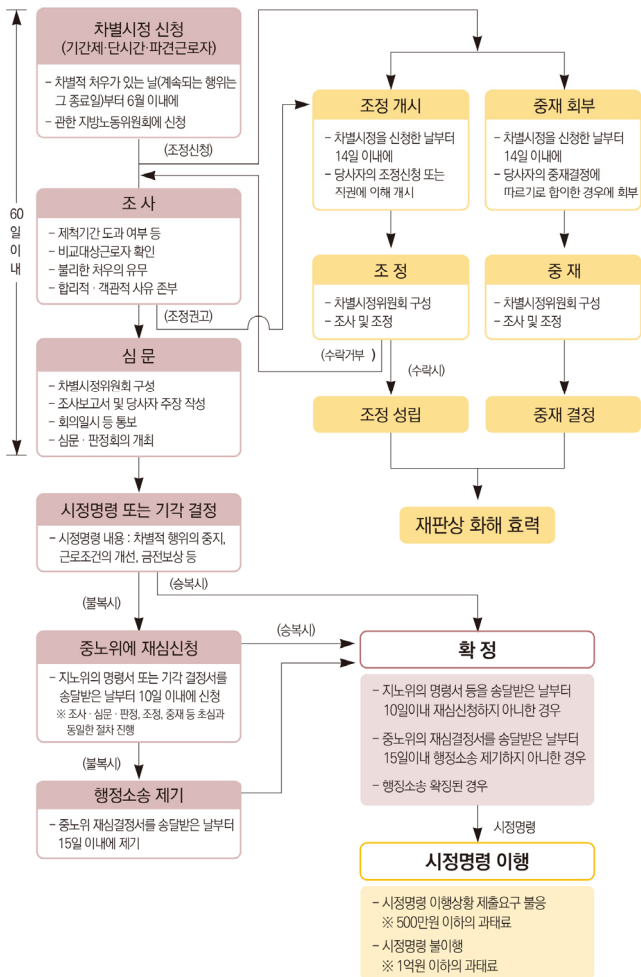
-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차별 관련 분쟁 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 (시정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시정요구)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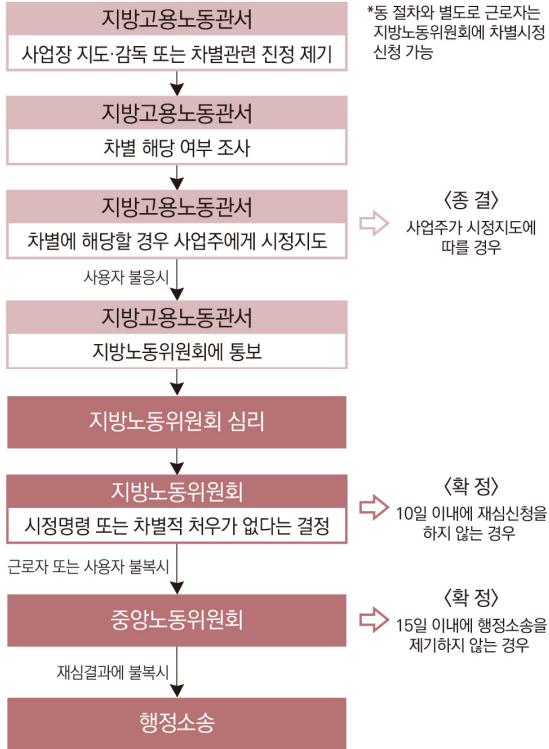
III 신청기간

-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근로감독관을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123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노사발전재단(☎ 02-6021-1230),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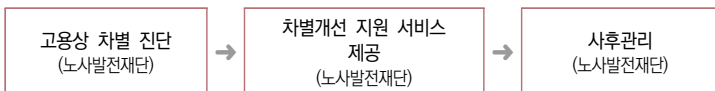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I 사업내용

- '24년 목표: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점검 및 자율적 개선 지원
 -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23.12.)
-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예방교육·상담) 사업주·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차별예방교육 실시, 근로자 대상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권리구제 지원
 - (홍보) 차별인식개선 캠페인, 우수사례 발표회 등 홍보 활동 수행

I 사업추진체계



124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사업목적

- 사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 지원 및 법 위반의 사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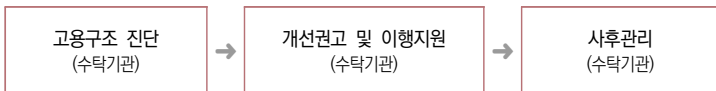
I 사업내용

- '24년 목표: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

*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1)

- 지원대상: 사내하도급 사업장(원청 및 하청)
 - 지원내용
 - 적정임금 보장·근로자복지증진·직업능력개발·안전과 건강보호 등 사업장 실태 진단
 - 이중구조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적절한 개선방향 제시 및 이행유도 등
- * 불법파견차별처우 등 법 위반 소지 확인 및 개선 안내 포함

I 사업추진체계



125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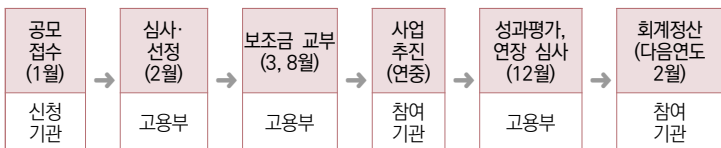
-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컨소시엄도 가능), 자치단체, 협회·유관단체 등에서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최대 50%(3억원 한도) 지원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플랫폼 기업(컨소시엄도 가능), 자치단체, 플랫폼종사자 관련 협회·유관단체
- (지원내용) 신규 일터개선 사업 소요 경비의 최대 50%(최대 3억원)
- (지원기간) 플랫폼기업 원칙 2년, 자치단체 원칙 1년(평가 후 1년 연장)
- (사업공모) '24.1월 신규 참여기관 모집 공고(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유형) 아래 3가지로 구분

구분	내 용
쉼터	• 배달라이더, 가사근로자 등 이동 노동자가 이동 간 또는 대기시간 중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안전 조치	•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운영 (안전보호 장구 지급, 오토바이 점검센터 등)
기타	• 법률·노무·산재·세무·심리 등 상담 서비스 지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편의점·카페 이용권 지급,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플랫폼종사자 대상 복지증진 사업 추진 등

I 사업추진체계



09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126

최저임금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개요

-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I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 적용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 (수습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I 결정방법

-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최저임금 현황〉

(단위: 원,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시급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9,860
인상률	6.0	6.1	7.2	7.1	8.1	7.3	16.4	10.9	2.87	1.5	5.05	5.0	2.5

■ 산입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아래의 임금
 -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유급휴일·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Ⅰ 개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Ⅰ 주요 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명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 ▲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임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 ▲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 내역

Ⅰ 교부 방법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자로 교부할 수 있음
 - 사내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것도 가능
- 임금명세서 법정 서식은 없고, 법령에서 정한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면 사업장에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돋보기」) 배포
- 임금명세서는 재직자 기준으로 임금정기지급일에 교부하여야 함
 - 임금정기지급일 이전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작성 방법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고정적인 기본급의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일급제나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수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기재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공제액을 기재

■ 위반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횡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 있음(근로자 1명당·월별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30	50	100
·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	30	50

128

대지급금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사업목적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도산 대지급금	<지원 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비교: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사업명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간이 대지급금	· 1인당 최대 지급액(임금 3개월분+퇴직급여 3년분) (단위: 만원)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최대 금액	1,320	1,860	2,100	1,980	1,380	
<p><지원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p><지원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p><상한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p>* 재직자 대지급금 횡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p>						

129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I 사업목적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지급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작성 등

I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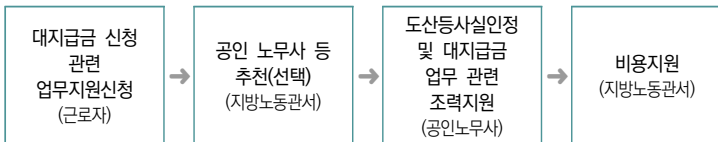
- 영세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비용 지원
- (지원대상)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조력지원 공인노무사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 1명당 6만원(사업장당 한도 300만원)

I 사업추진체계



130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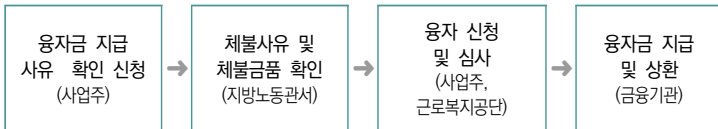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가동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사업장)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 지원내용(상한) :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1억5천만원 상한
- 용자상환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할상환
- 용자금리 : (담보) 2.2%, (신용보증) 3.7%

■ 사업추진체계



13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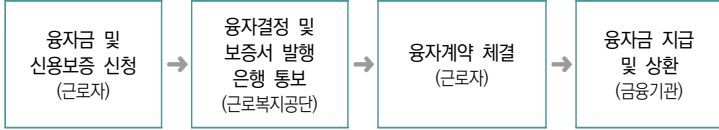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
 -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 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4년 809,290원) 금액 이상이 체불
 -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 지원내용
 -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사업추진체계



132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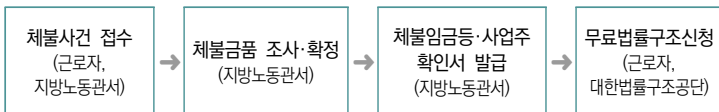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I 사업추진체계



I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유채동산 가압류: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요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 '22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336조원, 가입자 694.8만명(가입률 53.2%), 도입 사업장 43.6만 개소(도입률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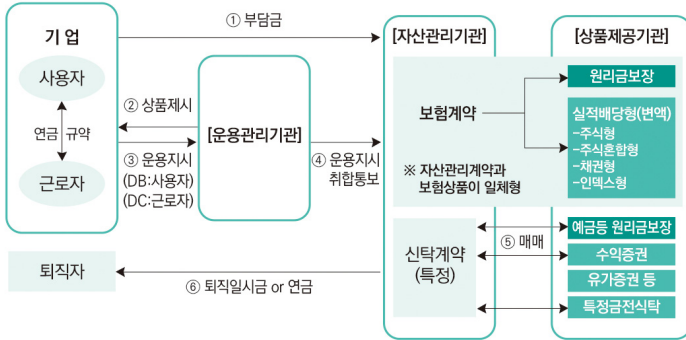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

- (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 (제도 운영)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참고

한눈에 보는 퇴직급여(연금) 제도

구분	퇴직급여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급여형(DB)	퇴직연금형(DC)	기업형IRP(특례)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부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절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절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에 따라 변동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퇴직금 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당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자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 총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도별 납입 부담금수준	-	근년 기준책임준비금 - 전년 기준책임준비금	-		-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가능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무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소득			적립금+ 운용소득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가입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적합 사업장 및 근로자	임금상승률 높고 도산위험낮은 사업장	임금상승률 높고 관리능력강한 사업장	채불위험 높거나 이직 연봉제 많은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업주-근로자 각 각 사업주 부담금의 10%(월 268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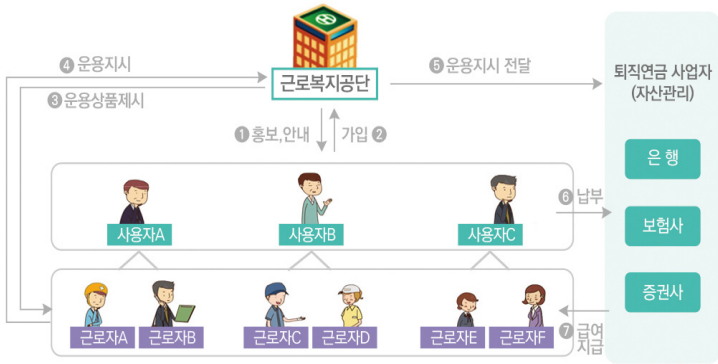
134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운영

-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 (사업내용) 제도설계, 규약작성·신고 지원, 가입자교육, 운용지시 전달 등 운영관리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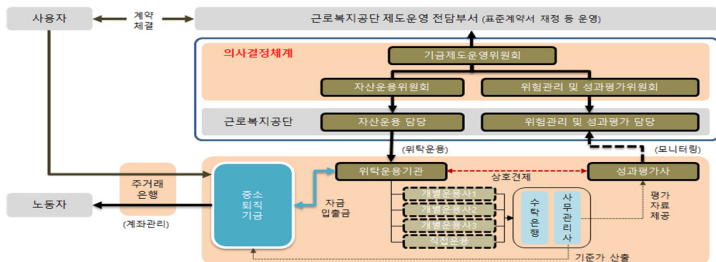
13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I 개요

- (사업개요)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사업대상)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 (제도설정)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 * (가입절차 간소화) 표준계약서 체결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 (부담금 수준 및 납입)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 납입 하여야 함
- (재정지원 및 수수료)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도입·정착되도록 재정지원
 - * (재정지원) 저소득근로자(월 268만원 미만)를 고용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각각 최대 30명)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의 10%
 - * (재정지원) '23.4월부터 5년간 면제

[중소기업퇴직기금 체계도]



■ 개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 (사업재원)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중소기업, 도급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초과~20%이하인 경우 등은 80%, 단, 출연금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 해당회계연도 출연금의 20% 초과인 경우 90%),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200만원 이상이고 일정금액(원청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50%)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이상 30%이하 범위

- (기금의 용도)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세제혜택

- 사업주: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 근로자: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137

근로복지기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 사업목적

-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 지원 대상 및 수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새내근로복지기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새내기금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새내기금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액의 100%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액의 100% 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액의 100% 내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협약 체결 시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p>* (1인당 지원한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범청 외 복지비용"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21-)</p> <p>* (공동기금 매칭 지원을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을 차등화('22-)</p> <p>→ ① 지원배제, ② 신청금액의 50%, ③ 75%, ④ 100% 이내</p>	

사업추진체계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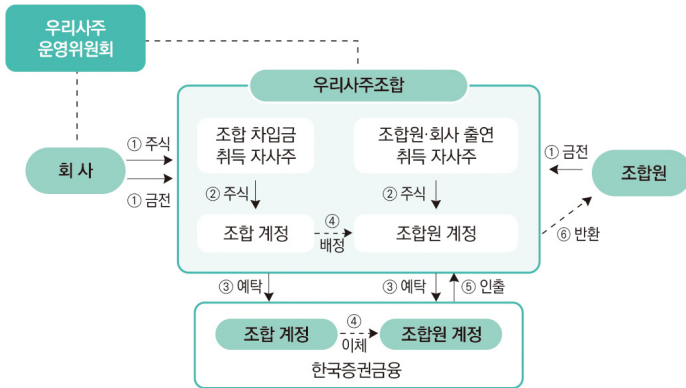
우리사주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02-6908-8401)

개요

-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 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운영체제



취 득 방 법	
· 조합원출연	→
· 회사·대주주 등의 무상출연	→
· 회사·주주·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배 정 방 법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세제혜택

-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조합원: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 1,500만원)을 소득공제
→ 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
 - 과세이연: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의무예탁기간 종료 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보유기간별 비과세혜택
 - 2~4년 미만 보유: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75% 비과세
 - 6년 이상 보유: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해당)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139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사업목적

- 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업 및 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전문가 상담 무상제공

상담분야

직장	개인	가족
① 직무스트레스	⑦ 성격진단	⑬ 부부갈등
② 조직 내 소통능력	⑧ 스트레스관리	⑭ 자녀양육
③ 업무역량 강화	⑨ 정서문제	⑮ 기타
④ 불만고객응대	⑩ 건강관리	
⑤ 일가정양립	⑪ 대인관계	
⑥ 직장 내 괴롭힘	⑫ 자살	

상담방법 및 이용 가능횟수

구분		대 상	지원내용	이용기준	
개인	온라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15개 분야 심리상담	1인당 연7회 회당 50분 이상 (게시판무제한)	
					게시판
					카카오톡
	전화상담				
영상상담					
오프라인	근로자				
기업	온/오프라인	교육 (집단프로그램)	6개 분야 집단교육·상담	1사당 연 3회 회당 60~90분	

Ⅰ 사업 추진절차

		회원가입	컨설팅 신청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진행	만족도 평가
EAP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① 상담유형	상담사가 전화 연락 상담일정 협의	온·온프라인 상담 실시 (회당 50분)	상담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회원가입 (개인·기업)	② 상담분야 ③ 상담사 선택				

14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 사업목적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융자대상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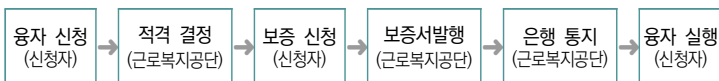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종 류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4년 315만원) *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감소생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용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4년 221만원)
	⑧소득생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기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4년 221만원)

구분	내 용	
	종 류	대 상 및 조 건
용자 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②훈례비	· 1,250만원
	④부모양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⑧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용자 금리	· 연1.5%(변동가능) · 신용보증료 연 0.9%-1.0%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 분	현 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 (생활안정자금) 315만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생활안정자금) 382만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용자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용자한도	·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 사업추진체계



141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 사업목적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용자 등 보증대상 용자사업*의 용자 대상으로 선정된 자

* (근복기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자, (고용기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기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임채기금) 체불근로자생계비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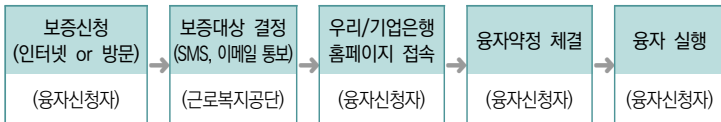
〈 신용보증지원 제외 대상 〉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와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내용: 각 용자사업 한도액으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증지원

* 용자 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9~1.0% 보증료 징수(용자금 지급 시 선공제)

■ 사업추진체제



142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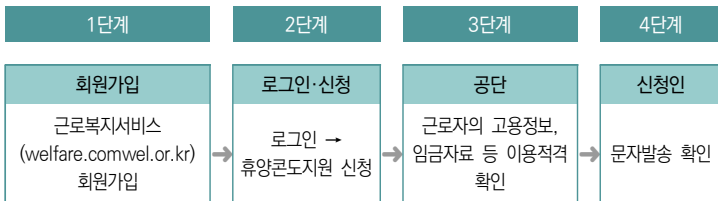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휴양콘도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 및 그 가족의 여가 욕구 충족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

I 사업내용

- 신청자격
 -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단, 평일에는 고용·산재가입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 및 사내 동호회장, 부서장 신청 가능
- 신청시기 및 선발
 - (주말·성수기) 이용희망일 전월 10일까지 신청, 이용희망일 전월 15일에 선발
※ 월평균 소득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발
 - (평일) 이용희망일 7일전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선발

I 휴양콘도 신청절차



Ⅰ 보유콘도 현황

콘도명	구좌수	평형	이용가능지역
계	702구좌	-	
한 화	210구좌	26, 38평	설악, 양평, 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튼), 지리산,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 노	150구좌	19, 26평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캔싱턴	155구좌	16, 21, 25, 26평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일 성	78구좌	15~28평	설악, 지리산, 부곡, 남한강, 제주, 경주, 무주
금 호	45구좌	17, 27평	설악, 통영, 화순, 제주
리 슝	32구좌	18, 24, 28평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구좌	17, 24평	무주, 도고, 제주, 지리산
금강산	11구좌	16, 27, 30평	고성, 제주

143

근로자 문화예술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I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I 사업내용

- 참가자격
 - 근로자(해외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근로자, 산재 근로자 및 실직일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포함)
 - 사업주(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산재가입 중소기업사업주, 가요·연극분야에 근로자와 함께 단체를 구성하는 사업주 포함)
 - * 기성전문가 및 현직공무원 제외, 정부나 민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최한 대회 최고상 수상자, 각 분야 금상 이상 수상자는 동일 분야 참가 불가(타 분야 참가 가능)
- 참가 분야

가요	연극	미술	문학
독창	기성극	회화, 서예(캘리그래피포함), 디자인, 공예, 사진(스마트폰 포함)	시, 소설(단편소설, 단편동화), 극작(희곡, 단편시나리오, 단편드라마), 수필
중창	창작극		
합창	뮤지컬		

- 혜택: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 상장 및 상금

10

산업재해 예방지원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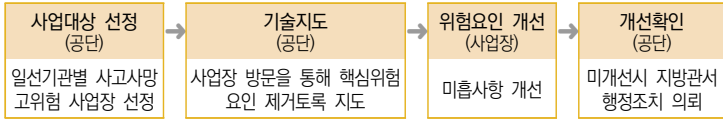
-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사고성 재해 관리, 화학사고 예방, 사업장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재해예방에 기여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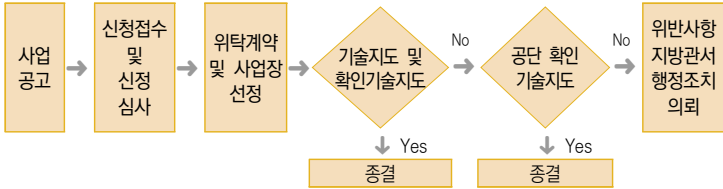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 재해통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공단의 기술지도 및 위험성평가 등 지원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또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사고사망 위험요인 개선 및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향상 유도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고위험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심사·확인
 -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및 고위험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 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역량·재정이 부족하여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려운 50인 미만 제조업 또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 등을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 지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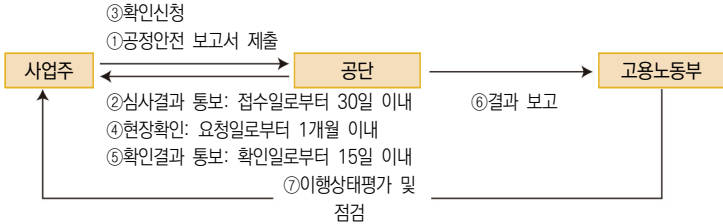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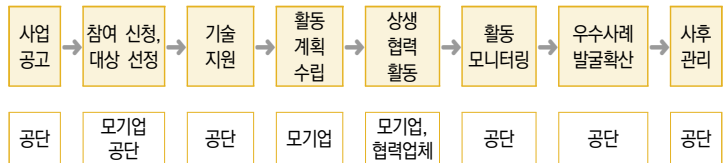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위탁)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 기타 사업: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145

산업안전 대진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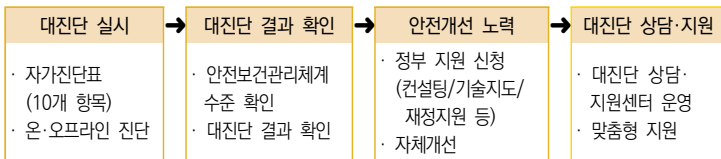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기업(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

I 사업내용

- (자가진단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비상대응체계,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
- (오픈형 자가진단) 정보 노출을 꺼려 대진단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사업장명을 특정하지 않고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설계
- (온·오프라인 진단) PC·모바일, 우편·방문 등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
- (진단결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3색 신호등으로 제시
- (맞춤형 지원 연계) 기업 상황에 따라 중점관리 및 일반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연계
- (실시시간) 연중(집중실시: 1월 ~ 4월말)
- (상담·지원센터) 공단 일선기관 30개소에 상담·지원센터 운영(☎1544-1133)

I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46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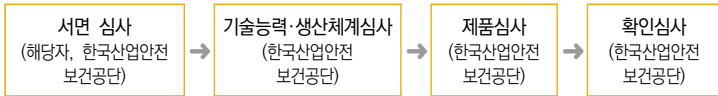
-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¹⁾, 자율안전확인 신고²⁾ 및 안전검사³⁾ 제도 운영

■ 사업내용

- (대상 설비) 안전인증 10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3종, 안전검사 13종
 - (안전인증)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자율안전확인신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인쇄기
 - (안전검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추진체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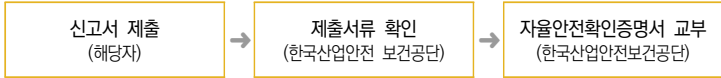
- 안전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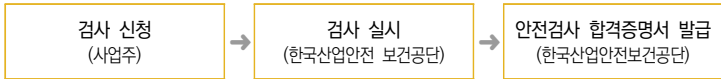
- 1)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2)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3)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 사업수행기관

기 관	업무범위			대표번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안전보건공단	전기종	전기종	전기종	154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	전기종 (단, 안전관리 수탁 사업장은 제외)	02-851-645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전기종	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	-			1577-7514

147

유해작업환경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비용지원, 질식 위험 관리, 석면 등 유해인자 취급에 대한 기술지도 및 노출정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특고 포함)
- 지원내용
 - ▶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원
 - 질식 고위험·취약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예방 장비를 적시에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
 - ▶ 석면 취급작업의 체계적 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석면해체·제거 업체의 수준 향상을 통해 석면에 의한 직업병 사전예방
 -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전문기관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보건 관리요령을 지도하는 등 기초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
 - ▶ 필수근로자 건강보호 지원
 - 필수근로자의 업무상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 건강진단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직종 특성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 ▶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지원
 - 필수노동자 등 근골격계질환 다발 취약직종 유해요인 조사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 개선품목 지원

■ 사업목적

-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다양한 유해 인자에 대한 적시대응,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직업성질환의 업무관련성 규명, 안전보건서비스 기관의 신뢰성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정보관리를 통해 근로자 업무상질병 예방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특고 포함)
- 지원내용
 -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설치·운영
 -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 상담 등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전국 6개 권역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질병의 업무 기인성을 파악하고, 직업성 질병 발생 사업장의 유해환경 개선 및 고용부 재해조사 시 전문적 조언을 제시
 -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새롭게 발생하거나 인자별·시기별·지역별로 발생하는 산업보건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컨설팅 및 인증
 - ▶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 장시간·야간근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심층 건강진단 및 집중관리를 통해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 ▶ 근로자 화학물질 노출정보 제공
 - 근로자가 취급하는 미지의 화학물질 유해성 및 노출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 ▶ 직업병 역학조사 및 안전보건서비스기관 정도관리
 -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근로자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 특수·진폐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를 통한 민간기관의 진단·분석 수준향상 및 신뢰성 제고
-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통보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관보 등에 공표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 MSDS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MSDS를 제출하고, 양도·제공 시 MSDS를 함께 제공하여 직업병 예방 및 사고 신속 대응 가능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사전승인을 받고 MSDS에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여 근로자 알권리 확보

149

산재예방시설 용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544-3088),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www.clean.kosh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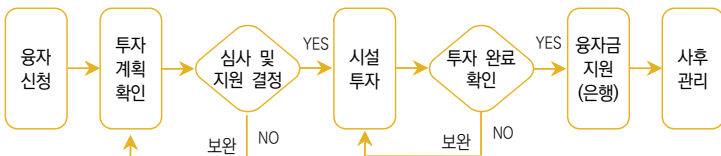
I 사업 목적

-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산재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용자·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I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 조건: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고정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내용
 - 용자금 지원 신청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확인, 투자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 확인
 - 용자금 지원 대상자(우선순위)는 “용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용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사업 참여사업장 등 우선지원
 - 용자금 지원 이후 용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

I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150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클린사업 대표번호☎ 1544-3088),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사업목적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상시 5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등*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 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 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및 폭염·한파 등 기후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품목 등(홈페이지 참고)

- ②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에 한함):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 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교육 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등) 설치 비용 지원(최대10억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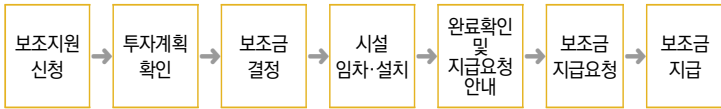
구 분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비율
추락 방지 안전 시설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 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 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	<p>▶ 지원금액 :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3개소를 1개소로 산정하되 노동부고시·공단 규칙개정 시 변동가능 * 20억 미만 9개소, 20억~50억 3개소 까지</p> <p>▶ 지원비율:공단 판단금액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미만(65%), 50억원미만(50%)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p>
사망 사고 등 고위험 개선	<p>▶ 산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근로자 1명 이상)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③ 태양광 설치·작업공정 보유 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④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p> <p>▶ 영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따른 2호~24호 설비 보유 또는 임대업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p>	<p>▶ 사망사고 예방 품목 또는 고용 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기존방식)</p> <p>▶ 컨설팅·기술지도 직직사항에 대한 즉시개선이 필요한 경우 (Quick-pass지원)</p>	<p>▶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중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를 상위업종 등)</p> <p>▶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p> <p>▶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1회) * 공단 규칙 개정이후 적용</p> <p>▶ 지원비율 : 사업장 당 소요금액의 70%</p>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제조·서비스업)



-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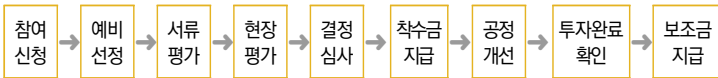
- 지원대상 및 조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사업장 및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사내하청 제외)
 - 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최대 1억원)

②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 지원내용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①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 수제품및 기타 제품제조업, ④ 식료품제조업, ⑤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⑥ 금속제련업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사내하청 제외)으로서 - 원청에서 하청의 공정개선 비용일부를 ① 직접지원 또는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 ③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공단 시행)을 통해 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내용	위험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지원 조건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 (최대 1억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 (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건강일터 조성지원

■ 사업목적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반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으로 각 설비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등 공학적 설비: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 분진 취급 및 조리흡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서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제외

• 지원내용

구 분	국소배기장치 등
지원 품목	국소배기장치(조리흡 환기설비 포함) 발산원 밀폐설비
지원 비율	·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규모 이하: 공단 판단금액의 70% ·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한도	최대 5천만원 (단 조리흡은 최대 2천5백만원)

* 세부 지원기준, 지원품목 등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kosha.or.kr>) 참조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I 사업목적

- 중소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사고사망 감축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지원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50인 미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 80%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 안전시스템 등 31종*(24.2 현재)

* 자세한 품목은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참고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I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151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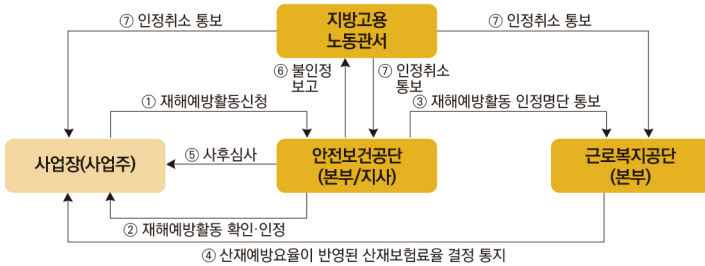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적용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10% 산재보험료 할인*
 - * ①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복 할인 적용
 - (재해예방활동 인정)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노동시간 조기 단축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21.6.30까지
- 산재보험료 인하율
 - ┌ 위험성평가 인정: 20%
 - └ 사업주교육: 10%
- 인정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법·제도 운영·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 (안전보건공단)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결정 및 통지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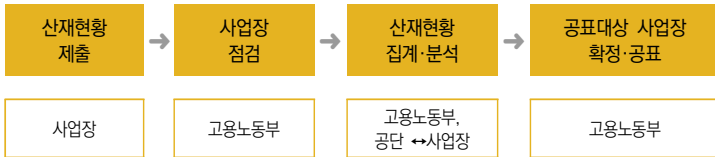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044-202-8812)

■ 사업개요

- (목적)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을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대상) 도급인의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업장

■ 사업 절차



■ 사업내용

- (사업장 점검·지도)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청업체 산업재해현황 파악 여부 등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
- (산재현황 집계·분석) 원청 사업장 제출자료를 산재현황DB와 연계하여 해당 원청별로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자 등 현황 집계·분석
- (확정 및 공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필요 시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심사), 최종 확정하여 대상 사업장 공표

사업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27.)에 대비하여 시공능력순위 200위 초과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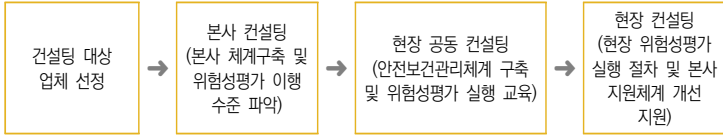
사업내용

- (수행기관) 공단 직접 지원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의 안전전문 기관 등을 선정하여 위탁 지원 병행
- (적용대상) ① 컨설팅 희망업체, ② 중대재해 발생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③ 점검 및 감독 시 확인된 안전관리 취약 업체 등
 - 공단직접 지원: 고위험 사업장 500개사, 업체당 3회(본사1, 현장2)
 - 민간위탁 지원: 중위험 사업장 1,000개사, 업체당 7회(본사3, 현장4)
- (컨설팅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및 위험성평가 중심의 현장 위험 요인 확인·개선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이 연계된 자율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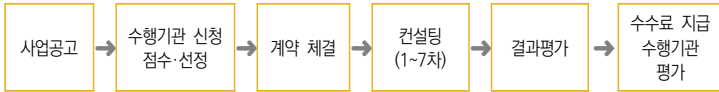
*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확인개선, ④ 안전보건교육,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 공단지접 지원



▶ 민간위탁 지원



154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I 사업개요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도록 규정(산안법 제73조)

II 사업내용

- 계약의 체결
 - (대상) 공사금액 1~120억원 건설공사 및 건축허가대상 공사 등
 - (주체)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
- 지도기관 지정 및 현황
 - (지정기준)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를 구분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시행령 [별표19])
 - (지도한계)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를 실시, 요원 1인당 지도 현장 수는 최대 일 4회, 월 80회 이내(시행령 [별표18])
 - * 지도기관별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기관이 지정받은 지방청 관할지역으로 제한 (단, 전기·정보통신, 소방 분야는 최초 지정 인접 지역에 추가 지정신청 가능)
 - (지정현황) 총 346개소(법인:199, 개인:147)/'23.12월 기준

계	서울	충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346	34	138	45	29	55	45

- 업무수행체계
 - (건설현장) 발주자는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 등에 대해 확인·개선 권고
 - (고용부 및 공단) 기관지정, 기관평가 및 점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질 좋은 안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155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개요

- 민간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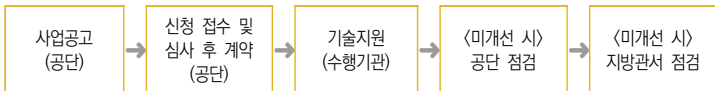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사망사고가 빈번한 7개 고위험 현장·작업에 대해 12가지 위험 요인 중심 자율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방식 지도

〈7개 고위험 현장〉 ① 공장, ② 축사시설, ③ 주택, ④ 근생시설,
 ⑤ 창고시설, ⑥ 아파트, ⑦ 토목공사
 〈7개 고위험 작업〉 ① 지붕 개·보수, ② 외부도장, ③ 철거·해체,
 ④ 리모델링, ⑤ 인테리어, ⑥ 옥상방수, ⑦ 관로설치

- (지원대상 1: 현장) 7개 고위험작업·현장 지원
 - 고용부·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가 신청하여 공단에서 인정한 현장도 지도 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2: 본사) 지붕공사업종 등록 전문건설업체 본사
 - 본사 지원 물량(4,800개소) 전부를 지붕공사 업체에 집중하고,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1억 미만 지붕공사 현장도 추가지원
- (지원물량) 14만회(목표 사업장 수: 12만개소)

■ 사업추진체제



156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I 사업목적

- 위험이 높은 공사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을 작성하고 사전에 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사 및 시공 중 이행상태 확인으로, 산재 예방

I 사업내용

- (적용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산안법 제42조)

▲ 높이 31m 이상 건축공사 ▲ 3만m² 이상 건축공사 ▲ 5천m² 이상 다중문화시설 공사
 ▲ 5천m² 냉동·냉장창고의 설비·단열공사 ▲ 50m 이상 교량공사 ▲ 터널공사
 ▲ 10m 이상 굴착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전용댐 등

- (심사절차) 사업주는 전문가(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의견을 들어 계획서 작성, 안전공단 심사 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판정

* ▲(적정) 착공 가능, ▲(조건부 적정) 착공 가능, 확인 단계에서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부적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착공 중지 또는 계획변경명령

- 동일 현장에서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또는 단위작업공사)가 있는 경우, 계획서 분리 제출·심사 가능

- (자체심사) 2년간 사망사고 미발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율심사업체로서 스스로 심사하여 심사결과만 공단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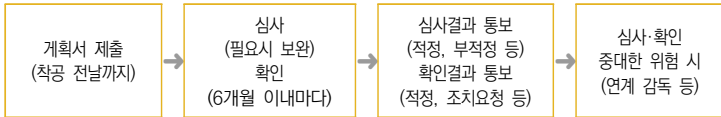
▲ ① 시공능력순위 1~200위 종합건설업체(토건), ▲ ②기업의 직전 3년간 평균산재를 이하,
 ▲ ③ 안전관리전담조직 설치운영 ▲ 산재예방활동실적 70점 이상,
 ▲ ④ 8.1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 사망재해 없을 것

- 단,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부실한 안전관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즉시 배제('22.8월~)

- (이행점검) 계획과 실제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계획 변경 시 적정성,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점검

- 안전공단의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경미한 위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지방관서 통보
 - 지방관서는 안전공단의 '작업중지 및 과태료' 요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처분 부과
- (확인주기) 6개월 마다 1회 이상 확인, 다만, 위험 공종 진행,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 집중관리* 현장은 2~3개월에 1회 이상 확인
 - * ① 물류창고, ② 사망사고 발생업체 현장, ③ 안전관리 불량현장

■ 사업추진체계



15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객관인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개요

- 건설 사업주가 일용근로자 채용시 지정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도록 함(법 제31조)

사업내용

- (내용·시간) 총 4시간

과 목	내 용	시 간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사고 빈발 공사(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 소개 • 거푸집, 갯폼, 붓칠 등 건설현장 용어 설명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의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역할 • 19가지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 지붕, 개구부 등 사망사고 다발 12대 위험요인, 태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2시간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1시간

*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요인과 구체적인 안전수칙 중심의 교육 제공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및 표준교재 전면 개편('23년~)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국어, 미얀마, 베트남어 등 교재 제작

-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장기실업자(3개월 이상),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등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 근로자는 비용지원 참여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교육을 이수, 공단에서 교육 기관에 교육비(4만원) 대지급
 - * 공단↔교육기관 계약에 따라 비용지원 이수생에게 추가비용 징수 불가
 - 교육기관 방문 또는 교육기관 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158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 평가지표 홈페이지(const.kosha.or.kr)

■ 사업목적

- 건설업체별 사고사망만인을 확인서를 발급하여 발주자 및 원도급사의 수급인 선정 시 안전관리 역량 확인 유도

■ 사업내용

- (발급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체
- (산정방법) 전년도 사고사망자수를 집계하여 연간 사고사망만인을 산정

$$\text{사고사망만인율}(\%) = \text{사고사망자수} / \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 상시근로자수는 건설업체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을 환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 (제공정보)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동종(종합, 전문) 건설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국내공사 실적액 등
- (발급방법)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 평가지표 홈페이지'(const.kosha.or.kr)에서 신청, 온라인 발급
*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자사 확인서에 한해 발급

사고사망만인을 확인서 활용방안

- ① 건설공사 계약 전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계약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에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요구
 - 건설공사발주자 → 원도급 건설업체 ▲ 원도급 건설업체 → 하도급 건설업체
- ② 요구받은 건설업체는 자사 확인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신청·발급
- ③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요구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 제출

— 2024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11

산재근로자 지원



개요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적용범위

-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 (특례) 노무제공자*(당연적용,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무급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
 -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 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프리랜서,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
 -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출퇴근재해 요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해 매년 요율 산정(숲 업종 동일한 요율 적용)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종류	62	60	58	58	58	58	51	45	35	28	28	28	28	28
업종 별 요율	평균	17.7	17.7	17.0	17.0	17.0	17.0	16.5	15.0	14.3	14.3	14.3	14.3	14.1
	최고	354	354	340	340	340	340	323	281	225	185	185	185	185
	최저	6	6	6	6	7	7	7	7	6	6	6	6	5
출퇴근요율	-	-	-	-	-	-	-	1.5	1.5	1.3	1.0	1.0	1.0	0.6

-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 원청의 하청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
 - ①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대기기업의 사고사망자 수,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실적요율 인하비율 조정

목적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급여 종류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
 - * 최고보상기준: 1일 253,354원의 70%, 최저임금(1일 78,88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시 유족에게 지급
 -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 상시간병급여: 44,760원(전문) 41,170원(일반)
 - * 수시간병급여: 29,840원(전문) 27,450원(일반)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 상병보상연금: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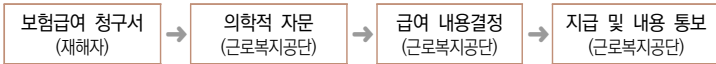
- (장례비) 산업재해로 사망시 장례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
 - *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8,125,360원, 최저금액 13,053,080원
 - * 선지급(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은 최저금액 지급 후 추후정산
-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애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애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기타 훈련은 600만원/연)
 -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80만원/월), 제4급~제9급(60만원/월), 제10급~제12급(45만원/월)
 -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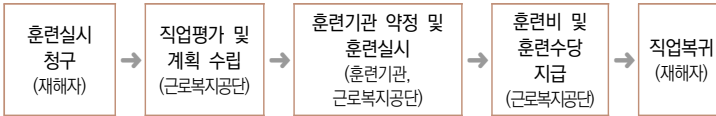
• (요양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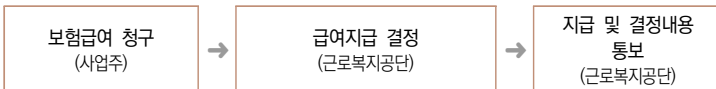
• (산재보험 급여청구)



• (직업재활급여: 훈련)



• (직업재활급여: 직장복귀지원금)



161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I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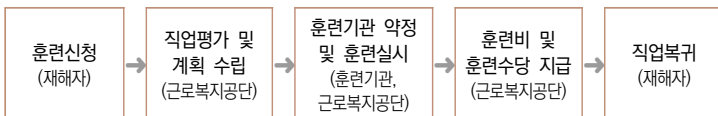
-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지원내용: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구분	내용
신청기간	장해등급판정일부터 3년 이내
훈련비용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 그 외 훈련: 6백만원 한도
훈련기간	최대 12개월
훈련수당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월 출석율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과정,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I 사업추진체계



16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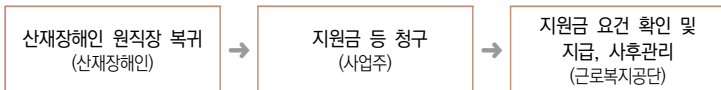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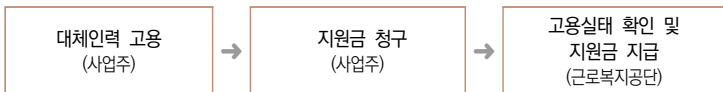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요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 지원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일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 사업추진체계



164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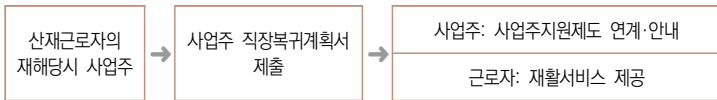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작성한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가 확인된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
-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지원제도(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를 연계·안내하고, 필요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지원
 - 근로자에게는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집중재활치료, 작업능력강화 훈련,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심리상담 등)를 제공

■ 사업추진체계



16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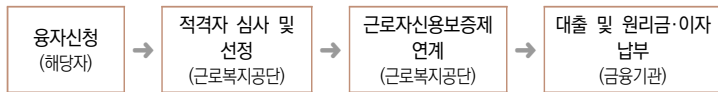
I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I 사업내용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용자신청일 기준)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훈례비·장례비에 한정)
- 지원내용: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훈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각 1,500만원 이내
- 이자율 및 상환방법: 연리 1.25%,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훈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사업자금·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수시 접수
 - ※ 재정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I 사업추진체계



166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사업목적

-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임시·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진폐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을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를 지원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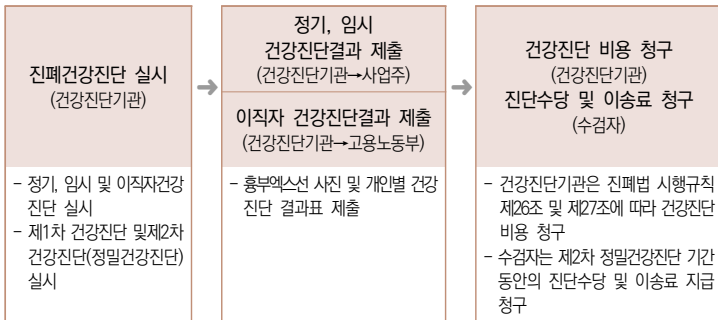
- 지원대상: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 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황석)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애급여가 지급된 광업

- 지원내용: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정기·이직자·정밀건강진단 비용) 및 부대비용(진단수당, 이송료) 지급

* 진단수당 : 1일당 50,000원

■ 사업추진체계



167

진폐위로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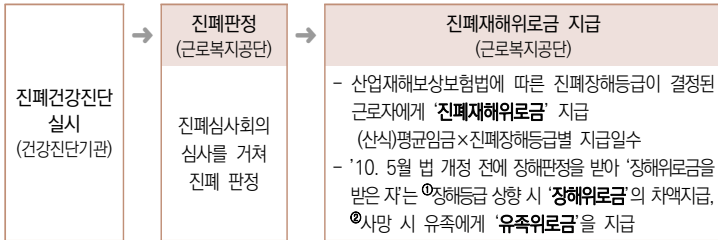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진폐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 지원내용: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진폐 근로자에게 진폐예방법 상의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와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진폐위로금을 지급
 - *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 제1급(1,040일) ~ 제13급(215일)
 -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 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 사업추진체계



12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p>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p>	<p>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이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22. 7. 1.)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 ('24. 1. 1.)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기존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 하지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일) 사업장부터 적용 · (전자카드 단말기)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의무가 있으며,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p>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p>	<p>현재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라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 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
<p>'6+6 부모육아 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 휴직제 확대 개편)</p>	<p>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육아휴직 활성화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 (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근로자 소통·상담·지원 커뮤니티	노조 미가입 근로자, 소규모기업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정책 의견수렴, 노동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능의 커뮤니티 운영	· (근로자 연대 공간)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지역지사 등 6개소에 전용공간 마련→ 편의시설 제공, 노동·법률상담 및 의견수렴 · (노동 옴부즈만) 지역 산단·공단 방문 '찾아가는 노동상담' 및 정책제안·건의사항 수렴 · (고용서비스 등 연계) 근로자 의견청취·상담 내용에 맞는 고용노동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신설	대기업과 협력사의 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 노력 촉진 필요	· (개요) 대기업(원청) 노·사의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을 지원 * 지원비율: 사업주 출연분의 100%, 근로자 출연분의 200%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 역량을 갖춘 자격 간 형평성 제고	· (개요) 건설안전 기사·산업기사 자격 뿐만아니라 산업안전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이 5년·7년 있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사용품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현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 (공사종류 개편)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개편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안전분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인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 법령 상 '소기업' 기준 제조업 중 부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50%(최대 1억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서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인 대·중소기업 안전 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통해 매칭 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40%(최대 8천만원)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	· (개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 (개요)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현장 300m이내, 남녀 구분 설치, 관리자 지정)에 ‘근로자 수 기준’ 추가 *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 (시행) '24.2.1. · (적용)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시행중인 건설공사 포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 (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 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단축 전 3개월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후 3개월간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지원기준) 소규모 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 (월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종사자 부담분은 지원 ·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지원방식)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청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 활동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 촉진	· (청년 연령범위 확대) 18~34세에서 15~34세+@ (병역의무기간 포함)로 확대 ·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고용유지지원금	국민 편의성 및 지원 효과성 개선을 위해 지원 조건 및 판단 기준 간소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판단기준을 단일화(원칙) - 기준달*과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비교 * (유급) 고용유지조치 시작일이 속한 달 직전달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접수일이 속한 달 직전달 · 고용유지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관련 사업장 지원 확대	·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으로 기능 강화 ·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까지 확대 ·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 신규 지원(월 최대 20만원) ·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월 최대 40만원)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 (연 2회 → 연 1회)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p>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p>	<p>재정 부담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위해 직장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p>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신설</p>	<p>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중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p>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p>	<p>학업과 구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 신설 및 '24년 시범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 200명 · * 만 18~24세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되, 훈련 수요에 따라 연령범위 확대 검토 · (주관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수준 및 기간) NCS 레벨 2~4 수준(기존 '전문기술과정'과 동일), 6개월 · (훈련내용) 전공과목,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 상담 등
<p>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p>	<p>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응시료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 · * 지원금 소진 시까지, 1인당 年 총 3회 지원으로 제한 · *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 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 지원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훈련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 개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분야 확대)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 중심에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첨단 및 융·복합 분야를 포괄하는 신기술 분야 전반으로 훈련확대 · (지원대상 확대) 구직자 중심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 및 사업주까지 지원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의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는 연매출(수입금액)을 4억원 미만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500만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수요 전망, 직무 역량 등을 조사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부담 훈련비 환급) 돌봄서비스 훈련의 훈련비 90%를 선부담하고,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선 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대기업-협력사가 수직적 계열을 이루는 산업계 특성상, 중소기업 역량강화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보유한 대기업 (대학 위탁 운영 가능) · (훈련대상) 중소기업 등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13년 일 학습 병행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재직자의 직무향상 훈련 위주 운영으로 청년의 조기입직 촉진 가능 약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의 조기입직 가능 강화 도모	· (운영기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 산업교육 기관 등) · (훈련대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사전이론교육(직무관련 기초교육 등), 훈련비(이론교육+현장훈련), (필요 시) 직장적응 서비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대폭 확대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필요	· (운영기관)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 · (훈련대상) 비전문 외국인력(E-9) · (훈련내용) 직무+언어+문화 교육 ·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 2024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대상확대) (現) 사용자 → (改) 사용자 + 근로자(신설) (각 각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 (요건완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부각	·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반기에서 매년기로 완화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정기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 관리감독자 교육종류·시간, 교육내용 등을 일반 근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수요자인 중소사업장 중심의 지원 신청방식 및 품목의 다양화	· 사업장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되도록 사업방식을 상사·공모 신청방식으로 변경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선택하는 자율신청품목 확대 및 신규품목 발굴 다양화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동간격 적용 가능	비계기동 설치 기준 합리화	·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동 간격 적용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개발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제6호) 건축물 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 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의무 신설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대형 붕괴사고와 재발 방지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이행	· (데크플레이트 설치 안전기준 명확화) ① 접합부 결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 · (현행화)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굴착면 붕괴 예방 기술기 기준 합리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제(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및 규제개선 요구 이행	· (개정 전, 제338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흠막이 등 조치 시 예외 · (개정 후, 제339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흠막이 등 조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술기 준수 시 예외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p>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p>	<p>그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진행하던 평가를 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확대)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종합 건설업체 → 모든 종합건설업체 · (평가기준 개편) 중·소 건설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평가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 유도
<p>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p>	<p>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산재승인) 시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시기 및 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산재승인) 등의 사유 발생 시 실시 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조사시기·대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조사시기 부여)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12개월 이내'로 함 - (조사대상 합리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p>고소작업대 이동 제한 및 안전인증기준 개정</p>	<p>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예외) · '23.12.2.부터 안전인증 받는 고소작업대에 과상 승방지장치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 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및 검사기준 강화	사고다발 산업용 리프트 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산업용 리프트의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 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시행일: '24.3.2.
도급승인 제도	도급승인 심사 시 제출 서류 합리화로 사업장 업무경감 및 비효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승인 서류 중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과 유사·동일한 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서류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승인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결과를 도급승인 심사 시에도 인정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제도	제도 시행('21.1.16.) 이전 MSDS대상물질들 제조·수입한 경우, '26.1.16.까지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16. 이전 연간 10톤이상 MSDS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장들은 '24.1.16.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제도를 이행해야 함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달라 발생했던 산업현장 혼란 해소 및 유해성·위험성 조사대상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 고분자 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

— 2024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1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4541	02) 2231-0009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4541	02) 2231-0009
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코스모빌딩	06671	02) 580-4900
서울강남지청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06278	02) 584-0009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김강타워	06192	02) 3468-4794
서울동부지청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0, 11층	05717	02) 403-0009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3-5층, 17층	05717	02) 2142-8924
성동광진고용복지+센터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1, 2층	04784	02) 2047-9900
서울서부지청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대시앙빌딩 3층, 5층	04157	02) 713-0009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플러자 1, 4, 5, 8층	04157	02) 2077-6000
서울남부지청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07262	02) 2639-2100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07262	02) 2639-2300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2, 3층	07526	02) 2063-6700
서울북부지청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01137	02) 950-9880
서울북부고용센터(본관)	(기존)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임시)서울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청동 2, 13층	(기존) 01762 (임시) 01413	02) 2171-1700
서울북부고용센터(별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빌딩 2,9층	01762	02) 2171-1700
강북성북고용복지+센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136 풍양빌딩 2,3,6,8,10층	01161	02-3406-09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서울관악지청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	08390	02) 3281-0009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 3층	08378	02) 3282-92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4층	22101	032) 460-4545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21559	032) 460-4701
인천북부지청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21068	032) 540-7910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층	21060	032) 540-5641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4-8층 (원당동)	22865	032) 540-2001
강화고용복지센터	인천 강화읍 강화대로 395 준프라자 5층	23035	032) 540-7990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 석천로 207	14537	032) 714-8700
부천고용복지+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 뉴월드빌딩 (중동)	14530	032) 320-8900
김포고용복지+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3~5층	10083	031) 999-0900
의정부지청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11787	031) 877-0009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 1~2층	11674	031) 828-0900
포천고용복지센터	경기 포천시 중앙로62 (신읍동65-17) 1층	11149	031) 850-7690
남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빌딩 3~4층	12237	031) 560-1919
동두천고용복지+센터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11357	031) 860-1700
구리고용복지+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11921	031) 560-5800
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	11498	031) 849-2300
고양지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종로 104번길 50	10497	031) 931-28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고양고용복지+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10364	031) 920-3937
파주고용복지+센터	경기 파주 중앙로 328 MH타워 8층	10930	031) 860-0401
경기지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16324	031) 259-0204
수원고용복지+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2-4층	16483	031) 231-7864
용인고용복지+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앤플러스빌딩	16977	031) 289-2210
화성고용복지+센터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85 이원타워 7층	18302	031) 290-0800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13627	031) 788-1505
성남고용복지+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13627	031) 739-3177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 (경안동)	12757	031) 799-2760
양평고용복지센터	경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11, 3층	12551	031) 740-6781
이천고용복지+센터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창전동)	17356	031) 644-3820
여주고용복지센터	경기 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 5층	12622	031) 740-6790
하남고용복지+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풍산동)	12919	031) 730-7000
안양지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14087	031) 463-7300
안양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타워 2-4층	14001	031) 463-0700
군포고용복지센터	경기 군포시 군포로 522, 5층	15855	031) 463-7610
광명고용복지+센터	경기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 1~2층 (철산동)	14216	02) 2680-1500
의왕고용복지+센터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2층 (포일동)	16004	031) 463-7460
안산지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15358	031) 412-1992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안산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15357	031) 412-6600
시흥고용복지+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 3층 (정왕동)	15049	031) 496-1900
평택지청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3층	17739	031) 646-1114
평택고용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1,2층	17739	031) 646-1205
안성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2층	17596	031) 686-1705
오산고용복지+센터	경기 경기동로 51, 오산고용센터 (오산동)	18131	031) 8024-9805
강원지청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24233	033) 269-3551
춘천고용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24415	033) 250-1900
가평고용복지센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 1층	12413	031) 580-0901
홍천고용복지센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56 로하스빌딩 7층	25139	033) 439-1901
강릉지청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	25535	033) 650-2500
강릉고용복지+센터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 (교동)	25528	033) 610-1919
동해고용복지센터	강원 동해시 동해대로 4921 (나인동 156-7) KT북평빌딩 1층	25810	033) 539-1901
속초고용복지+센터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 (조양동)	24872	033) 630-1919
원주지청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	26387	033) 769-0800
원주고용복지+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6448	033) 769-0900
태백지청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26015	033) 552-0009
태백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2층 (황지동)	26015	033) 552-8605
삼척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5층	25929	033) 570-19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영월출장소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6232	033) 374-0009
영월고용복지+센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6232	033) 371-626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47605	051) 853-0009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47209	051) 860-1919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0, 정우헤리티지빌딩 8층~10층 (하단동)	49426	051) 520-4900
부산중부지청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46332	051) 559-6688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광안동)	48267	051) 760-7100
부산북부지청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 (덕포동)	46938	051) 309-1500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코스모북부산빌딩 (화명동)	46524	051) 330-9900
창원지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의대로 532번길 28	51439	055) 239-6500
창원지청 별관 (지역협력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54 (서울 아동병원 6층)	51503	055) 239-5300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상남동)	51503	055) 239-0900
마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3-5층 (석전동)	51316	055) 259-1500
함안고용복지센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경길 32 함안메디칼센터 4층	52040	055) 278-9210
창녕고용복지센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8 성동빌딩 9층	50323	055) 278-9250
울산지청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 (옥동)	44664	052) 272-0009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06	44717	052) 228-1919
양산지청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석산리)	50635	055) 387-0009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부원동)	50925	055) 330-64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밀양고용복지+센터	경남 밀양시 백민로 69, 2층, 4층	50423	(055) 350-2800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중부동)	50629	(055) 379-2400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번길 43	52629	(055) 752-0009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2-5층 (장대동)	52755	(055) 753-9090
사천고용복지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9-1 (4층)	52517	(055) 760-6590
하동고용복지+센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52345	(055) 884-8219
거창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6	50143	(055) 949-6589
진주시청 별관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강남동 ABL)	52708	(055) 753-9090
통영시청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53016	(055) 650-1951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53016	(055) 650-1800
고성고용복지센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75 (양강빌딩 5층)	52942	(055) 650-1841
거제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6 우형빌딩 3층 (고현동)	53252	(055) 730-19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42140	(053)667-6200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범어동)	42020	(053) 667-6000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태전동)	41462	(053) 606-8000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대구 동구 아양로 22 (신암동)	41207	(053) 667-6900
경산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산시 중앙로85 3, 4층 (중방동)	38622	(053) 667-6800
영천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천시 금민로 63, 2층	38891	(054) 778-2591
대구서부지청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42768	(053) 605-90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내당동)	41857	053) 605-6500
칠곡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39890	054) 970-1919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42984	053) 605-9510
포항지청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대잠동)	37761	054) 271-6700
포항고용복지+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죽도동)	37751	054) 280-3000
울진출장센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7길 10	36324	054) 783-0841
경주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3층, 7층, 8층 (동천동)	38104	054) 778-2500
포항지청 지역협력과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3층	37751	054) 288-3500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2번길 8, 1층	37761	054) 271-6700
구미지청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임수동 92-31)	39390	054) 450-3500
구미고용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39281	054) 440-3300
김천고용복지+센터	경북 김천시 신앙2길 46 (신음동 792-9)	39547	054) 429-8900
영주지청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6088	054) 639-1111
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6088	054) 639-1111
문경고용복지+센터	경북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 4층	36977	054) 559-8200
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상주시 왕산로155 대흥빌딩 1층	37212	054) 559-8280
안동지청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36643	054) 851-8000
안동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36643	054) 851-8061
의성고용복지센터	경북 의성읍 문소3길 102-1, 4층	37337	054) 851-815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예천고용복지센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봉덕로 26, 2층	36827	054) 851-818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2층, 4-6층	61011	062) 975-6200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21 (북동)	61240	062) 609-8500
나주고용복지센터	전남 나주시 이창1길 39,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58217	061) 280-0183
화순고용복지센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1층	58135	061) 280-0155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2-3층 (월곡동)	62328	062) 960-3200
영광고용복지센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61	57036	061) 280-0159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63219	064) 728-7100
전주지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인후동 1가)	55014	063) 240-3400
전주고용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54936	063) 270-9100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수성동)	56178	063) 530-7500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1층 (하정동)	55770	063)630-3900
익산지청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여양동 626-1)	54552	063) 839-0009
익산고용복지+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남중동)	54619	063) 840-6500
김제고용복지+센터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김제지역자활센터 2층 (요촌동)	54392	063) 540-8400
군산지청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 (조촌동 852-1)	54076	063) 452-0009
군산고용복지+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조촌동 752-4)	54079	063) 450-0600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북 부안읍 변영로 145, 2층 (서외리 3-1)	56308	063) 580-0501
고창고용복지센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30 고창선문사 빌딩 1층	56431	063) 580-054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58691	061) 280-0100
목포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상동)	58748	061) 280-0500
해남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59037	061) 530-2900
무안고용복지센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안길 26	58524	061) 280-0160
영암고용복지센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암로 36, 1층	58418	061) 280-0190
여수지청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웅천동)	59691	061) 650-0108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조례동)	57966	061) 720-9155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웅천동)	59691	061) 650-0147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8-9층	57777	061) 798-19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둔산동)	35238	042) 480-6290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 서구 문정로 56 (탄방동)	35262	042) 480-6000
금산고용복지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70 KT금산지점 1층	32740	041) 731-8690
공주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4층 (신관동)	32584	041) 851-8501
논산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내동)	32989	041) 731-8600
세종고용복지+센터	세종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30026	044) 865-3219
청주지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분평동)	28798	043) 299-1114
청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월드피아오피스텔(사창동)	28575	043) 230-6700
진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진천군 자안로 9, 4층 402 ~ 403호 (덕산읍)	27871	043) 229-0791
옥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옥천군 삼양로 91, 문화회관 별관 3층 (옥천읍)	29032	043) 730-41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천안지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31107	041) 560-2800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빌딩 2-5층, 9층 (성정동)	31110	041) 620-7400
당진고용복지센터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2층	31769	041) 620-7456
예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1길 20 더예당 2층	32435	041) 620-9511
아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아산시민문화복지회관	31513	041) 570-5500
충주지청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3-3	27428	043) 840-4000
충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 (문화동)	27428	043) 850-4000
제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화산동)	27184	043) 640-9310
음성고용복지+센터	충북 음성군 금강읍 무곡로 213, 2층	27630	043) 880-8600
보령지청	충남 보령시 옥마로 42	33482	041) 931-6640
서산출장소	충남 서산시 쌍연남1로 37 (잠흥동)	31979	041) 661-5630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석남동)	31995	041) 669-5600
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을 동백로 336 태광빌딩 2층	32147	041) 661-5691
보령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33474	041) 930-6200
부여고용복지센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신동업길 6, 3층 (성모크리닉센터)	33153	041) 930-6236
서천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109번길 25, 3층	33646	041) 930-6244
홍성고용복지센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7, 3층 (블란서빌딩)	32226	041) 930-6248
고객상담센터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44543	국번없이 1350
중앙노동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4층	30117	044) 202-8226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07295	02) 3218-60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합동청사 4층	46332	051) 559-37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영동동961-2) 나라 키움 수원통합청사 3층	16703	031) 259-50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2층	35208	042) 520-807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7층	61011	062) 975-61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4층	42140	053) 667-65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 창원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47, 10층	51393	055) 239-80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6~7층	22101	032) 430-310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 남구 두왕로 318, 4층	44740	052) 208-000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3층	24233	033) 269-340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5층	28798	043) 299-12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3층	55014	063) 240-1600
제주특별자치도지노위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63219	064) 710-7990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	세종 법원로 82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	30148	044) 202-8499
최저임금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03호	30117	044) 202-84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11호	30117	044) 202-7912
고용보험심사관실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7호	30117	044) 202-7920

2024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2024년 2월 발행

발행 고용노동부

편집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2-7053, 7055
044)202-8022

인쇄 열림기획(주)
044)868-5055
